

공 보

제691호 2019. 4. 3.(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491호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3
거창군 조례 제2492호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8
거창군 조례 제2493호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거창군 조례 제2494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20
거창군 조례 제2495호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거창군 조례 제2496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거창군 조례 제2497호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거창군 조례 제2498호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47
거창군 조례 제2499호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49
거창군 조례 제2500호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거창군 조례 제2501호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61
거창군 조례 제2502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거창군 조례 제2503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72
거창군 조례 제2504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거창군 조례 제2505호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거창군 조례 제2506호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88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57호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96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9-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17
 거창군 고시 제2019-34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소로2-196호선, 소로2-196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18
 거창군 고시 제2019-35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소로3-57호선)사업 실시
 계획 인가 고시 120
 거창군 고시 제2019-36호 도로명주소 고시 12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9-426호 2018년도 재난관리실태 공고 124
 거창군 공고 제2019-446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54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70

회 관									
--------	--	--	--	--	--	--	--	--	--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4월 3일

거창군 조례 제2491호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중요정책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 거창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기능)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요정책 등에 관
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제안·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거창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나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3. 군민생활불편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해촉)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회의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 등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군민행복위원회 회의참석 위원수당

나. 관련 조문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유 태 정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9-21
----------	---------

제출일	2019. 2. 25.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군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소통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을 정함(안 제2조)

- 1) 군정 주요현안,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나 시책의 도입·추진, 제도개선 등에 관한 자문·제안·심의 등

나. 위원회 구성을 정함(안 제3조)

- 1) 20명 이내,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호선
- 2) 위원은 군정에 관심을 가지는 군민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다. 임기, 해촉, 위원장 직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제6조)

라.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간사, 의견청취를 정함(안 제7조~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 2019년 1차 추경 시 예산 4,2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규제개혁담당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 14.~2. 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4월 3일

거창군 조례 제2492호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각1인”을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을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 순서가 앞서는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

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결정”을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본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보안업무시행요강 제4조에 의한”을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구성) ① <u>위원회</u>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u>각1인</u>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p> <p>② <u>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안제출 주무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③ <u>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u>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④ <u>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위원은 10인</u>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p> <p>⑤ <u>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u></p>	<p>제2조(구성) ① <u>거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u>각 1명</u>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p> <p>② <u>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 순서가 앞서는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③ <u>당연직 위원은 각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u>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④ <u>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위원은 10명</u>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p> <p>⑤ <u>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u></p>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주요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8. 보안업무시행요강 제4조에 의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9.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주요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8.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9.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22
----------	---------

제출일	2019. 2. 25.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위원장 변경(안 제2조제2항)

1) 기획예산담당관 ⇒ 직제 순서가 앞서는 국장

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 변경(안 제2조제2항)

1) 의안제출 주무실과장 ⇒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
다. 당연직 위원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항)

1) 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수도사업소장
⇒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담당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생략함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4월 3일

거창군 조례 제2493호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변호사의 운영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와 법무
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정심판

- 사건(이하 “소송 등 사건”이라 한다)의 자문
- 2. 법령 해석·적용 등에 관한 자문
- 3.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소송 등 사건의 수행
-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같은 고문변호사를 다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 및 소송 등 사건의 수행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 1. 고문변호사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소송 등 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 가. 불변기일 경과, 변론 불출석 등 불성실하게 소송 등을 대리하는 경우
 - 나.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제6조(이해충돌행위 금지)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소송 등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
- 2.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7조(자문실적 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자문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제8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9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된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고문 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자문 실적부(월)

종 류	의뢰 연월일	의뢰내용	회신 연월일	회신내용	비 고
<p>종류는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그 밖의 자문사항”으로 기재함</p>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2조(위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자문수당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66,000
	소송비용	5,000	5,000	5,000	5,000	5,000	20,000
	총 계	18,200	18,200	18,200	18,200	18,200	91,000

3. 관련 의견 : 고문변호사 위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립하여 고문 변호사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유 태 정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23
----------	---------

제출일	2019. 2. 25.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고문변호사 위촉제한과 해촉사유,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을 명문화하여 고문변호사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 변경

1)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고문변호사 위촉제한 근거 신설(안 제2조제2항)

1)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다. 고문변호사 임기 변경(안 제4조제1항)

1) 1년 ⇒ 2년

라. 고문변호사 해촉 근거 신설(안 제5조)

1) 고문변호사가 사임을 원하거나 고문변호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마. 이해충돌행위 금지 사항 신설(안 제6조)

1) 소송 등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 또는 자문을 하거나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바.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금액과 시기 변경(안 제9조)

1) 지원금액 : 5천만원 ⇒ 2천만원

2) 지원시기 : 판결 이후 지급 ⇒ 피소 이후 지급

1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8,200천원 확보

다. 합 의 : 예산담당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2. 27.~2019. 1. 1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4월 3일

거창군 조례 제2494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2. 공장건물 배치도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5. 오수 및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오수·폐수 유입 처리를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통지) 제3조에 따라 오수·폐수 유입 처리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사업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폐수관로의 맨홀에 배수설비를

연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연결할 때 그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실시 설명서, 배수설비 평면도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결된 배수설비에 부식, 접속 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폐수 등 배출 신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 방법을 고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폐수 등 배출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은 서면으로 알린 날부터 10일 이

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군수는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월의 사용료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사용료 부담지원) ①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입주지역으로 인한 초기입주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용료 일부를 제2항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100분의 60이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별표 2의 산출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수·폐수의 유입 처리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의 오수·폐수 유입 처리 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아 처리 시설에 오수·폐수를 유입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유입 처리 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용료 산출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처리시설 사용료(BS)

$$BS = M \times \left\{ 0.5 \times \frac{BLi}{\sum_{i=1}^n BLi} + 0.5 \times \frac{F(Li)}{\sum_{i=1}^n F(Li)} \right\}$$

가. M: 월간 사용료 = 유지관리비 + 시설개선충당금

1) 유지관리비 :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연간 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 금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E = Ei \times Fi \times R$$

· Ei: 시설 설치 비용

· Fi: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율 = 2/1,000

· R: 물가상승률(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지수

나. BLi: 배출 사업자의 일평균 유입승인 오염 부하량

1) $BLi = \text{유량}(m^3/\text{일}) \times [BOD + COD + SS + T-N + T-P \text{농도}(mg/\ell)] / 1,000$

2) 해당 월의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이 유입 승인받은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유입 처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F(Li): 개별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F(Li) = a \cdot Qi \times \left(\frac{BODi + CODi}{2} + SSi + T-Ni + T-Pi \right) / 1000$$

1) Qi: 배출 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 등의 실제 배출유량

2) BODi, CODi, SSi, T-Ni, T-Pi: 개별사업장의 BOD, COD, SS, T-N, T-P 농도

3) a: 유량 누진계수

유 량 (m ³ /일)	a
$Q_i \leq 200$	1.0
$200 < Q_i \leq 500$	1.1
$500 < Q_i$	1.2

2. 실제 배출되는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1) 폐수, 침출수 등 배출 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2) 오수 배출 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나)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를 말한다) 사용량 \times 0.8(오수전환율)

다)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 수 \times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1)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 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나)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 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 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 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 군수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 수탁자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2) 오수의 경우

가)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COD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T-N 30 mg/ℓ (기숙사 40 mg/ℓ)
- T-P 3 mg/ℓ (기숙사 4 mg/ℓ)

[별표 2]

사용료 지원금(감면) 산출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출공식

$$CS = a \times Qi \times 539 \text{원}/m^3$$

가. CS: 월간 사용료

나. a: 누진계수

(오수배출업소 a=1.0, 폐수배출업소 a=1.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업소 a=1.2)

다. Qi: 업소별 월간 배출유량

라. 539: 연간유지관리비 252,285,000원 / (30일*12개월)=700,792원/일

700,792원/일 ÷ 1,300m³/일=539원/m³

2. 시설개선충당금 산출공식

가.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

$$\text{개별 사업장 시설개선충당금} = \text{월간 시설개선충당금} \times \frac{Qi \text{ m}^3/\text{일}(\text{개별사업장 배출유량})}{\sum Qi \text{ m}^3/\text{일}(\text{전체사업장 배출유량})}$$

나. 월간 시설개선충당금(E):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사용료 산출기준 [별표 1]의 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출공식의 시설개선충당금 항목을 적용한다.)

다. 배출유량: 사용료 산출기준[별표 1]의 2. 실제 배출되는 유량 및 농도 산정 방법의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을 적용한다.

3. 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

오수배출업소의 사용료 지원금은 거창군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기준에 따른 요금과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2. 시설개선충당금 산출공식)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오수·폐수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포함)는 폐수배출업소기준(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출공식)을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p>○ 승인내용</p> <p>1. 월간 하루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하루</p> <p>2. 월간 하루평균 폐수배출농도</p> <p>BOD: mg/l, COD: mg/l, SS: mg/l, T-N: mg/l,</p> <p>T-P: mg/l, 그 밖의 오염물질:</p> <p>3. 월간 하루평균 오수배출량: 톤/하루</p> <p>4. 하루평균 오염 부하량: kg</p> <p>○ 조건:</p>		
<p>「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오수·폐수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인)</p>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p>「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고 인: (서명 또는 인)</p> <p>거 창 군 수 귀 하</p>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담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
- 나. 관련조문 : 제11조(사용료 부담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담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 출	사용료 부담지원	34,000	45,000	300,000	300,000	300,000	979,000
	소계	34,000	45,000	300,000	300,000	300,000	979,000

3. 관련 의견

기업체의 사용료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리시설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 60퍼센트 도달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 일부 지원

작성자 :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의안 번호	2019-24
----------	---------

제출일	2019. 2. 25.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조건 사항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용부담 및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유입 처리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 1) 폐수 등 유입처리의 승인 등의 내용(안 제3조)
 - 2) 배수설비의 설치 통지의 내용(안 제4조)
- 나. 배수설비의 설치·관리 등의 내용(안 제5조)
- 다. 폐수 등 배출 신고 및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바.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51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제1회추경예산 34백만원 확보예정/운영비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2. 8.~12. 27.
 - 나) 예고결과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붙임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반영 여부
<p>주식회사 가우정푸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기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 조례 제정으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귀 기관에 강력한 항의를 하며 친기업적인 방안을 수립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법적의무 사항이며, 	<p>미반영</p>
<p>KC FEED (케이씨피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조례 제정은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거창군 직원 채용이 중단되거나 인원감축의 사유가 되므로, ○ 어려운 기업여건을 감안하여 군에서 기업지원을 늘려주고 조례 제정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제12조에 기업체의 사용료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료 일부 지원 조항을 규정하였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4월 3일

거창군 조례 제2495호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나목·다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과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같은 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12. (생략)</p> <p>13.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p> <p>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u>자</u>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u>자</u>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12. (현행과 같음)</p> <p>13.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p> <p>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u>사람</u>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u>사람</u>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25
----------	---------

제출일	2019. 2. 25.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이 조례에 따른 기업의 지원기준 중 하나인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고용보험료 납부서로 변경하여 승강기산업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 증명 근거를 변경함(안 제2조제13호가목)

- 1) 기업체에서 제출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서로 변경
-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 28.~2. 1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4월 3일

거창군 조례 제2496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임원)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 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p> <p>②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p> <p>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삭 제></p>
<p>제5조(이사회) ① 장학회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p>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p> <p>③ 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삭 제></p>
<p>제6조(사무국) ①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p>	<p><삭 제></p>
<p>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p>	<p><삭 제></p>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26
----------	---------

제출일	2019. 2. 25.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재단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원 규정 삭제(안 제4조)
- 나. 이사회 규정 삭제(안 제5조)
- 다. 사무국 규정 삭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제9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6조 「민법」 제40조·제43조
- 2) 「지방자치법」 제3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2. 24.~2019. 1.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4월 3일

거창군 조례 제2497호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조사업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 제8호)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사업 신청 등) ① 군수는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과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 효과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1조·제12조를 제6조·제7조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군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군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우수교원 및 우수 학생유치에 필요한 사업 7.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p>제2조(보조사업 범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p><삭 제> <삭 제></p> <p>6.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p>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치원장,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은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거창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청 공무원 3명,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센터의 교육진흥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보조사업 신청 등) ① 군수는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과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 효과

<삭 제>

<삭 제>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삭 제>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삭 제>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제12조 (생략)

제6조~제7조 (현행 제11조·제12조와 같음)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지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남/여)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 목적			
보조사업에 <u>필요한</u> 경비			
총사업비	군비보조	자체부담	<u>그 밖의 경비</u>
보조사업 기간			
사업계획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27
----------	---------

제출일	2019. 2. 25.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법령 위배소지가 있는 규정과 개최실적이 없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2018. 12. 18.)으로 조례로 위임된 보조신청 절차 등을 신설하는 등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사업 범위 삭제(안 제2조)
- 나.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보조사업 신청절차 보완(안 제4조)
- 다. 유명무실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6조~제10조,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1. 7.~1. 28.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4월 3일

거창군 조례 제2498호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의안 번호	2019-28
----------	---------

제출일	2019. 2. 25.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2009. 12. 30. 제정·시행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 25~2.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4월 3일

거창군 조례 제2499호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거창군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랑상품권”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가맹점”이란 거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창군수가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을 개인 및 법인에 판매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이하 “환전”이라 한다) 업무를 금융기관(이하 “판매대행점”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 권면액(券面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원
2. 1만원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가맹점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업소가 군에 소재할 것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가 아닐 것
4. 유흥업소 등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소가 아닐 것

②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가맹점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가맹점으로 지정한 영업소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가맹점이 그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액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잔액을 요구하면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해서는 안 된다.

제7조(가맹점 지정 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6조를 위반한 경우

제8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3조에 따른 상품권 담당 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려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상품권을 훼손하여 상품권 권면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2. 상품권을 위조·변조하는 행위
 - 3.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 4. 위조·변조된 상품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환전 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환전한도는 가맹점당 월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환전해야 한다.

제11조(할인 판매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금액의 6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액은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과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판매 및 환전금액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 및 추석 등 연 4회 이내, 상품권 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이용 실적이 우수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추가 할인 판매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상품권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담당 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품권의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될 때에는 판매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권면액의 90퍼센트로 한다.

제16조(우대한 금액의 환수) 군수는 사용자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3조(상품권의 발행 등) ③ 군수는 상품권을 개인 및 법인에 판매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이하 “환전”이라 한다) 업무를 금융기관(이하 “판매대행점”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할인 판매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금액의 6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액은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과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출	128,000	40,000	40,000	40,000	40,000	288,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세출	소요비용
계	128,000
상품권 할인 판매 지원	60,000
판매대행사 수수료	15,000
상품권 및 봉투제작, 홍보비 등 비용	26,500
시스템구축	26,500

작 성 자 :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의안 번호	2019-29
----------	---------

제출일	2019. 2. 25.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창사랑상품권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상품권 종류와 유효기간을 정함(안 제4조)

1) 5천원권, 1만원권

2) 발행일부터 5년 유효함

다. 가맹점의 지정, 준수사항, 지정취소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제7조)

라. 판매대행점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9조)

마. 환전 청구 및 환전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1) 환전한도 : 가맹점당 월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바. 할인판매,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제12조)

1) 상품권 금액의 6퍼센트 이내에서, 개인에게만 연간 40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인 판매

2) 추가 할인 판매 : 설 및 추석 등 연 4회 이내 상품권 금액 10퍼센트 이내, 이용 실적이 우수한 사용자

사.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유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정함(안 제13조·제14조)

아. 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우대한 금액의 환수에 대하여 정함(안 제15조·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28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22.~11. 1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4월 3일

거창군 조례 제2500호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령운전자”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9조(재정지원 등)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p> <p>3 “고령운전자”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p> <p>제9조(재정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p>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표주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19-24
----------	---------

발의일자	2019. 3. 12.
발 의 자	표주숙, 이흥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의원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고령운전자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3호)
- 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등 지원(안 제9조3항)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000만원 확보 예정(10만원*100명)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교통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2. 14.~2.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4월 3일

거창군 조례 제2501호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서를 가지고 있는 가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역이행자 중 한명 이상이 거창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등)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다음 각 호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3. 보건소 진료비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매년 문화예술 관람권 4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동차

②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김종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25
----------	---------

발의일자	2019. 3. 12.
발 의 자	김종두, 이홍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의원

1. 제안이유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함.

2. 주요내용

- 가. 병역명문가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등을 정함(안 제5조)
- 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2)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 3) 보건소 진료비
 - 4) 문화예술 관람권 매년 4매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2. 14.~2.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4월 3일

거창군 조례 제2502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별표6”을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6”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중전 제3항) 중 “따라”를 “따라 개인, 단체 등에”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활폐기물"이란 <u>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과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무실, 화장실쓰레기등 가정쓰레기와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p> <p>2.~7. (생략)</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p> <p>①~② (생략)</p> <p>③ <u>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별표6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④ (생략)</p> <p>제11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① <u>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p> <p>② <u>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 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u></p> <p>③ <u>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활폐기물"이란 「<u>폐기물관리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과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무실, 화장실쓰레기등 가정쓰레기와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p> <p>2.~7. (현행과 같음)</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6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p> <p><u><삭 제></u></p> <p><u><삭 제></u></p> <p>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u>따라 개인, 단체 등에</u>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보고, 검사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명기한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또는 사무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시설장비, 현물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적정 재활용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사업장 2.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장 3. 쓰레기 봉투 제작업자 4. 쓰레기 봉투 판매자 5. 청소대행업자 <p>②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자료제출 장부검사등의 요구가 있을 때 관련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p>	<p><삭 제></p>

【별표 5】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 및 수수료 징수 기준

(단위: 원/개당)

종 별	규 격	처 리 비
가전 제품류	냉장고 500리터 이상 300리터 이상 300리터 미만	8,000 6,000 4,000
	텔레비전 107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상	5,000 3,000
	세탁기 모든 규격	4,000
	에어컨 26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10,000 5,000 3,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이상	4,000
가구류	장농 90센티미터 이상 1쪽 90센티미터 이상 1/2쪽 90센티미터 미만 1쪽 90센티미터 이상 1/2쪽	15,000 8,000 10,000 5,000
	서랍장식장 1대당	5,000
	서랍장 5단 이상 4단 이하	4,000 2,000
	식탁 6인용 이상 6인용 이하	5,000 4,000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장식장 모든 규격	4,000
	응접테이블 1대당	4,000
	응접세트 긴의자 의자	5,000 2,000
	침대 1인용 1인용 매트리스 1인용 프레임 2인용 2인용 매트리스 2인용 프레임	10,000 5,000 5,000 15,000 8,000 7,000
	전축케이스 1개당	3,000

종 별	규 격	처리비	
가구류	책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5,000 4,000
	신발장	모든 규격	2,000
	문갑	모든 규격	3,000
	쇼파	1인용 소형 4인용 대형 6인용 이상	5,000 7,000 10,000
	밥상	4인 이상 4인 미만	3,000 2,000
	싱크대	모든 규격	5,000
	책꽂이	모든 규격	3,000
	의자	모든 규격	3,000
	옷걸이(행거)	모든 규격	2,000
생활용품	캐비닛	모든 규격	4,000
	서류캐비닛	4단 이상 3단 이하	3,000 2,000
	피아노	어프라이트 그랜드	10,000 15,000
	쌀통	용량 80킬로그램 이상 용량 80킬로그램 미만	4,000 3,000
	벽시계	1미터 이상 1미터 미만	5,000 3,000
	인형류	5킬로그램 기준	2,000
	장난감류	5킬로그램 기준	2,000
	가방	1개당	2,000
	액자	1개당	4,000
	진열대	1개당	2,000

종 별	규 격	처리비	
그 밖의 폐기물	문짝	1쪽당	5,000
	수족관	100센티미터 이상	7,000
		100센티미터 미만	4,000
	거울	1개당	3,000
	자전거	유아용	4,000
		어른용	5,000
	운동기구	1미터 이상	5,000
		1미터 미만	3,000
	의료기기	1미터 이상	5,000
		1미터 미만	3,000
	유모차	모든 규격	4,000
	깨진 유리	10킬로그램 기준	2,000
	항아리	1개당	3,000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물탱크 포함한 변기통	모든 규격	5,000
	이동식 변기통	1개당	10,000
	찬장	1대당	3,000
	가스렌지 받침대	모든 규격	2,000
	고무통	1개당	5,000
	욕조	모든규격	3,000
	장관	3.3제곱미터당	3,000
	물탱크	킬로그램당 (1톤탱크: 26킬로그램)	280
	카펫	3.3제곱미터당	2,000
	이불	1개당	2,000
	목재	20킬로그램 기준	2,000
	플라스틱류	10킬로그램 기준	2,000
	재봉틀	1개당	5,000
	탁구대	1개당	5,000
병풍	1개당	2,000	
간판	60×180센티미터 이상	7,000	
	60×180센티미터 미만	4,000	
	입간판	3,000	
건설폐기물	톤당	28,000	
롤온박스	1대당	100,000	
<신 설>	폐소화기	3.4킬로그램 이상	4,000
		3.4킬로그램 미만	3,000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30
----------	---------

제출일	2019. 2. 25.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7. 7. 01. 시행) 개정으로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지정됨에 따라 조례에 노후소화기의 수거근거를 마련하여 폭발위험이 있는 노후소화기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근거없는 부담규정 등 정비(안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 1) 과태료, 보고·검사 규정 삭제
- 2) 과태료 관련 별지서식 삭제

나. 장려금 지급대상 명확화(안 제11조)

다. 폐소화기 배출기준 신설(안 별표 5)

종별		규격	처리비
그 밖의 폐기물	폐소화기	3.4킬로그램 이상	4,000
		3.4킬로그램 미만	3,0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4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 10. ~ 1. 3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4월 3일

거창군 조례 제2503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를 “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4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97조, 제199조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납기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p> <p>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에 따름</p> <p>2.~3. (생략)</p> <p>②~⑤ (생략)</p> <p>⑥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된 분뇨 처리 수수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포탈된 금액에 「지방세기본법」이 정하는 가산금을 추가한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제28조(이의신청)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4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4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p> <p>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와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에 따름</p> <p>2.~3. (현행과 같음)</p> <p>②~⑤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97조, 제199조를 준용한다.</p>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0리터	<u>122원</u>	<u>174원</u>	15원	<u>137원</u>	<u>189원</u>

2. 개인하수처리시설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u>14,945원</u>	<u>17,100원</u>	1,125원	<u>16,070원</u>	<u>18,225원</u>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u>1,011원</u>	<u>1,150원</u>	150원	<u>1,161원</u>	<u>1,300원</u>

비고

1. “수집·운반” 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포함
2. “처리” 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말함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31
----------	---------

제출일	2019. 2. 25.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화조 폐쇄로 수거물량이 감소되고 인건비 등 원가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어 환경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조치요구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 결과 현실화율이 50퍼센트 정도로 낮아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안 별표 6)

1) 수거식 화장실

가) 10리터기준 137원⇒189원 : 52원 인상, 인상률 37.9퍼센트

2) 개인하수처리시설

가) 750리터까지 기본요금 16,070원⇒18,225원 : 2,155원 인상, 인상률 13.4퍼센트

나) 100리터마다 초과요금 1,161원⇒1,300원 : 139원 인상, 인상률 11.9퍼센트

나. 법령 근거 없이 가산금 징수규정 삭제(안 제24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4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2. 18.~2019. 1. 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4월 3일

거창군 조례 제2504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계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가축분뇨 (원/킬로리터)	<u>16,000</u>	<u>18,000</u>	10,000	<u>6,000</u>	<u>8,000</u>

[별지 제2호서식]

가 축 분 뇨 반 입 대 장

일련 번호	일자	배 출 자		수집·운반		반입량 (킬로리터)	처리금액 (원)	인수자	인계자	비고
		성 명 (농장명)	주 소	성 명 (업체명)	차량번호					
		(남/여)		(남/여)				(남/여)	(남/여)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32
----------	---------

제출일	2019. 2. 25.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동률 증대에 따른 약품비 등 운영비 증가로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원가산정 결과 현실화율이 28퍼센트로 낮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안 별표 2)

- 1) 킬로리터당 16,000원 ⇒ 18,000원
- 2) 2,000원 인상, 인상률 12.5퍼센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제3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2. 18.~2019. 1. 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4월 3일

거창군 조례 제2505호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제7호를 제1호·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 제6호)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군민”을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영”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와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5장(제20조,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를 말한다.</p> <p>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p> <p>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p> <p>4.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분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를 말한다.</p> <p>5. “자전거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7조·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단지등에 설치하는 자전거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6. “군민자전거”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p> <p>7.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군민자전거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p> <p>8.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1. “군민자전거”란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u>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p> <p>2.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군민자전거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u>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영 제5조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②~④ (생략)</p> <p>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군수는 <u>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② 군수는 <u>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 또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u></p> <p>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u>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u>「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u></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군수는 <u>법 제11조와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u></p> <p><삭 제></p> <p>② <u>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u></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제5장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u> <u>제20조(설치)</u>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1조(삭제 2015.12.10.)</p>	<p><삭 제> <삭 제></p>
<p><u>제22조(기능)</u>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u> 2. <u>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u> 3. <u>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u> 4. <u>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u> 5. <u>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등의 참여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u> 6. <u>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u> 7. <u>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u> 	<p><삭 제></p>
<p><u>제23조(구성)</u>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경찰서, 교육지원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도시계획·도로교통 또는 자전거이용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삭 제></p>
<p><u>제24조(위원의 임기)</u>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삭 제></p>
<p><u>제25조(위원장의 직무)</u>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삭 제></p>
<p><u>제26조(회의)</u>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u>제2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u></p> <p><u>제2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33
----------	---------

제출일	2019. 2. 25.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2013년 최초 위원회 구성 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를 폐지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재기재사항인 용어 정비(안 제2조)
-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
- 다.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삭제(안 제5장)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1. 28.~2. 1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4월 3일

거창군 조례 제2506호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 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대상자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사업 대상자”라 한다)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일 것
 2. 매년 군수가 결정·공고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 이상을 생산할 것
 3.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 및 농산물대금을 월별로 선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
- ② 군수는 군의 주요 재배 농산물 중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농협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사업 대상자 신청) 사업 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업 대상자의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협약 체결 등) ① 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 및 수수료(이하 “이자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대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나누어 미리 지급해야 한다.

제8조(이자등의 정산절차) ①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수매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자등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등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재원) 제8조에 따른 이자등의 재원은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자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사업”을 “사업,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또는 그 밖에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고, 수매 후 농가가 지급받을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농업인 현황

농 가 현 황					연 락 처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성별	영농경력	집	휴대전화
				년		

○ 신청내역

농작물 재배 면적(제곱미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품종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40킬로그램/포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적용 희망량	
			수량(포대/40킬로그램)	희망금액(천원)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 년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붙임 1. 전년도 농협 자체수매 확인서(지역농협 발행) 1부.
 2. 신용조사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3.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증명서(해당 농가) 1부.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남/여) (인)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거부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이자등 지급청구서

1. 사 업 명: 20 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

2.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농협명: 0000농업협동조합)

○ 주 소:

○ 대표자: (남/여)

3. 이자등 청구액: 금 원(W)

4. 이자등 청구 명세

(농가, 포대/40킬로그램, 원)

사 업 대상자	신청량 (계약량)	지 급 개월수	월 지급액	총 지급액	이 율	이 자 청구액	대행 수수료
					연 퍼센트		

5. 지급계좌번호: 농협 (통장사본 첨부)

위와 같이 20 년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에 따른 이자등을 정히 청구합니다.

- 붙임 1.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자 개인별 내역(한글 서식) 1부.
2.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자 월별 계산내역(엑셀 서식) 1부.

20 . . .

청구자 주 소:

성 명: 0000농업협동조합 (인)

거창군수 귀하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6조(협약 체결 등) ① 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 및 수수료(이하 “이자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군비	50	50	50	50	50	250
	소계	50	50	50	50	50	25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이자보전 : 50백만원

가. 평균 이자액 130,300원 × 383명 = 49,904,900원 산정,

나. 인당 평균 지원액 : 7,000천원(월 1,000천원)

다. 인당 평균 이자액(월 1백만원 지급시) : 130,300원

라. 이자개시 2019. 4. 20.~이자종료 2019. 11. 30.

2. 지원예상 농가수 : 383명

작성자 :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9-34
----------	---------

제출일	2019. 2. 25.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을 월별로 배분하여 계획적인 영농을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거창군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대한 뜻을 밝혀 규정함(안 제2조)

1)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

나. 사업 대상자 기준을 정함(안 제3조)

1)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일 것
 2) 매년 군수가 공고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 이상 생산할 것
 3)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 및 농산물대금을 월별로 선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

다. 사업 대상자 신청과 심의를 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지역농협과 협약체결, 그 지역농협의 업무를 정함(안 제6조·제7조)

마.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이자등의 정산절차를 정함(안 제8조)

바. 사업의 재원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50백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24.~11. 1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4월 3일

거창군 규칙 제1257호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지정) ①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3조(가맹점 지정 제한)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거창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3. 매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소

- 4.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과 의무휴업 협약을 체결한 영업소
-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영업소

제4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제5조(가맹점 지정 취소)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맹점 지정이 한 번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2년간, 두 번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 규약을 거창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환전 청구 및 환전)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3일 이내로 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와 권면 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30일 내에 담당공무원 참석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제9조(수수료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결과에 따라 매월 15일 까지 판매대행점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판매·환전 현황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담당공무원 인수인계) 상품권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수인계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11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거창군과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부터 1년으로 하고,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하에 재협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거창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5천원권, 1만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적용범위는 거창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보관·반출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출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 할인율은 원칙적으로 개인은 6퍼센트, 법인과 가맹점 상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의 경우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10일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8,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7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장소는 판매대행점에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참석·확인하여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조·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거창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제12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거창군수와 상품권 판매대행점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년 월 일

상품명 발행권자

상품명 판매대행점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주소

대표자 거창군수

(서명)

대표자

(서명)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거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 종	
	대표자		취급품목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소 소재지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거창군 거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거창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지정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거래통장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거창군이 발행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거창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창군과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지정·변경·해지) ① 거창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가맹점 지정 취소) 거창군수는 가맹점이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지정이 한 번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2년간, 두 번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거창군 또는 가맹점 어느 한 쪽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상품권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거창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5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거창사랑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조·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⑤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제11조(성신행 및 업무협조) ① 거창군수와 가맹점은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거창군수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년 월 일

거창군

가맹점

상 호: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주 소:

대표자: 거창군수 (서명)

대표자: (서명)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거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거창군 - 호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 상 호:

○ 소 재 지:

○ 성 명:

○ 생년월일: (남, 여)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거창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거창군 - 호)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소 소재지			
	주 소			
해지 사유				
<p>「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거창군수 귀하</p>				
구비서류	가맹점 지정서 원본			

[별지 제7호서식]

거창사랑상품권 이용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자인 거창군과 거창사랑상품권의 사용자가 거창사랑상품권을 운용·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거창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5천원권, 1만원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거창군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거창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거창군은 이미 판매된 상품권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70 퍼센트 이상 물품을 구매할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사용자는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해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거창군은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거창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8호서식]

거창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	수량 / 매	금액 / 천원	비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위와 같이 거창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거창군 - 호)

청구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	------

판매대행점 귀하

거창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	수량 / 매	금액 / 천원	비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

[별지 제9호서식]

거창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권 면 액	매수	폐기방법	비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거창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직 성 명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거창사랑상품권 판매·환전 현황

(년 월분)

권종	인수		판매		환전		환전 잔액		재고	
	일련 번호	매수	일련 번호	매수	일련 번호	매수	일련 번호	매수	일련 번호	매수
계										
5천원권										
1만원권										

「거창군 거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사랑 상품권 판매·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직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거창사랑상품권 인수인계서

1. 거창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천원/매)

권면액	발행 내역		판매 내역		보유 내역	
	매수	발행액	매수	판매액	매수	보유액
계						
5천원권						
1만원권						

2. 거창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원)

환전액	미환전액	이자발생액	통장잔액	비고

붙임: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거창군 거창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사랑상품권 인수인계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수자 직 성명 (인)

인계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거창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인수 일자	발행번호		발행매수	발행금액	보관 장소	결재		
						담당자	담당 주사	과장
	5천원권							
	1만원권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19-13
----------	---------

제출일자	2019. 2. 18.
제 출 자	경제교통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 등을 정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판매대행점 지정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 나. 가맹점 지정 제한·절차·취소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제5조)
- 다. 상품권 이용규약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 라. 환전기한, 환전된 상품권 처리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제8조)
- 마. 판매대행점에 수수료 지급일 등을 정함(안 제9조)
- 바. 담당공무원 인수인계, 발행대장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0. 22.~11. 1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고시 제2019 - 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거 창 군 수

신 청 인	케이엘이에스(주) 대표 조선영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40
하 천 명 (하천등급)	중유천(지방하천)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신월면 과정리 960-1번지 등 2필지	
	면 적	일시점용 : 426.7m ² (토지의 점용)	
	점용기간	일시점용 : 2019년 03월 29일 ~ 2023년 06월 30일	
	목적 및 사유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 점용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소로2-196호선, 소로2-196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03호('95.05.12) 및 경상남도 고시 제113호('79.05.24.)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소로2-196호선, 소로2-197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9년 04월 03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면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가조 수월리 (소로2-196호선 외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가조	마상	소로	2	196	106.0	8	687	가조면 마상리 189-1	가조면 마상리 171-1	경고103호('95.05.12)	
					2	197	92.0	8	765	가조면 마상리 184-5	가조면 마상리 174-2	경고115호('79.05.24)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가조 수월리(소로2-196호선 외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0. 06. 30.

4.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8,448	1,452					
1	가조면 마상리	184-5	도	60	22	거창군 가조면 마상5길 51-16	정연중			2-197
2	"	184-3	전	716	179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470	이희자			2-197
3	"	185	과	986	142	안양시동안구평촌동 899-2 향촌아파트207동205호	김영선			2-197
4	"	186	과	2,469	285	안양시동안구평촌동 899-2 향촌아파트207동205호	김영선			2-197
5	"	174-2	전	196	59		거창군			2-197
6	"	189-6	도	763	45		거창군			2-196

7	"	188-5	대	507	11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89-1	장사준			2-19 6
8	"	188-2	과	59	59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89-1	장사준			2-19 6
9	"	188-3	대	132	132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89-1	장사준			2-19 6
10	"	187	과	936	229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6-1	동거창농업 협동조합			2-19 6
11	"	172-2	전	739	206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486-1	배화자의 1인			2-19 6
12	"	171-2	전	529	67	거창군 거창읍 강양4길 10, 502호(대동신흥빌라)	손정선의 1인			2-19 6
13	"	171-1	전	356	16		거창군			2-19 6

※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055- 940-3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소로3-57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465호('92.12.31)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소로3-57호선)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가. 2019년 04월 03일

나. 거창군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운정마을 (소로3-5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창	송정	소로	3	57	155.0	6	1,182	거창읍 송정리 445-6	거창읍 송정리 524-1	경고465호('92.12.31)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운정마을(소로3-5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0. 06. 30.

4.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7,622	1,182					
1	거창읍 송정리	445-6	도	286	11	-	거창군			
2	거창읍 송정리	1061-33	구	297	9	-	국(농림수산부)			
3	거창읍 송정리	444	도	57	5	-	거창군			
4	거창읍 송정리	1601-35	구	908	334	-	국(농림수산부)			
5	거창읍 송정리	445-5	구	196	69	-	국(농림수산부)			
6	거창읍 송정리	528-35	답	855	1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3길 33	권*원			
7	거창읍 송정리	528-13	답	465	184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3길 33	권*원			
8	거창읍 송정리	445-3	답	1,128	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201, 403동 202호 (분당동,샛별마을)	최*봉			
9	거창읍 송정리	528-12	답	1,172	86		거창군			
10	거창읍 송정리	521-8	대	79	45		거창군			

11	거창읍 송정리	528-10	답	506	161		거창군			
12	거창읍 송정리	528-9	답	1,024	161		거창군			
13	거창읍 송정리	521-2	답	67	67		거창군			
15	거창읍 송정리	522	답	284	16		거창군			
16	거창읍 송정리	528-37	답	119	12		거창군			
17	거창읍 송정리	528-37	답	119	12		거창군			
18	거창읍 송정리	524-1	답	60	4		거창군			

※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055- 940-3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3.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웅양면 웅양로 1456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112, 113, 114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1456	2009-12-28	2019-04-03	행정구역 웅양을 이용하여 웅양로로 명명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96-4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149-43	2009-04-01	2019-04-03	취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389, 386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고대길 79-67	2009-04-01	2019-04-03	고대라는 사람이 마을을 열었다고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621-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길 270	2009-04-01	2019-04-03	모곡천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어 붙여진 행정구역명 동변을 반영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818-2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2길 38-28	2009-04-01	2019-04-03	19세기 초 순조 때 이곳에 살던 진사 이지유의 호를 따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2018년도 재난관리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9. 4. 3.

거 창 군 수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전년도 우리군의 재난(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의 재난)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거창군 안전총괄과는 1개 부서 15명으로 5년 평균보다 3명 감소하였습니다. (2016. 7. 교통담당이 경제교통과로 조직개편)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9종(마을방송 등)으로 366개 소로 전년도 대비 11개 감소하였습니다.
 -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거창읍 상동급경사지 정비사업, 유령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해위험이 있는 재해우려지구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재해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예산 30백만원으로 주택 4,125건, 온실 48,825㎡ 가입 지원 하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 250백만원을 확보하여 법정적립기준 213백만원 대비 117%의 재난관리기금을 확보 하였습니다.
 - 2018년은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438백만원(도비 276, 군비 162)을 예산 편성하여 군비 142백만원 사용하였습니다.
 -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진단 결과 3등급으로, 전년도와 동일 하였습니다.
-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 공표결과 우리군은 평균 2.8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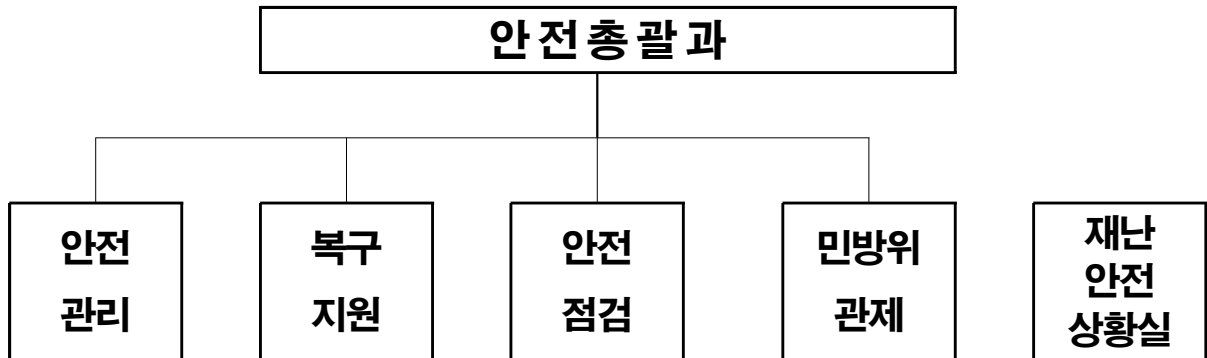
-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70시설 중 29시설이 내진성능 확보하였으며 전 시설물의 41%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미취학아동 1,892 초·중·고등학생 4,358 일반인 2,010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 ◆ 거창군은 재난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선제적·체계적으로 방재하였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군의 재난관리역량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 없음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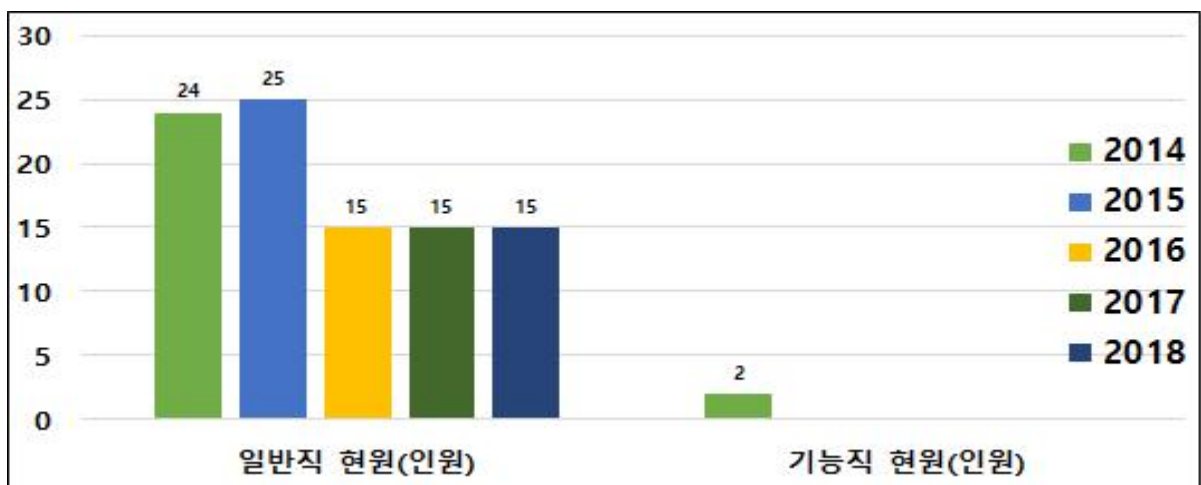


나.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기능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5		1	4	4	4	2		
	현원	15		1	6	3	4	2		

◆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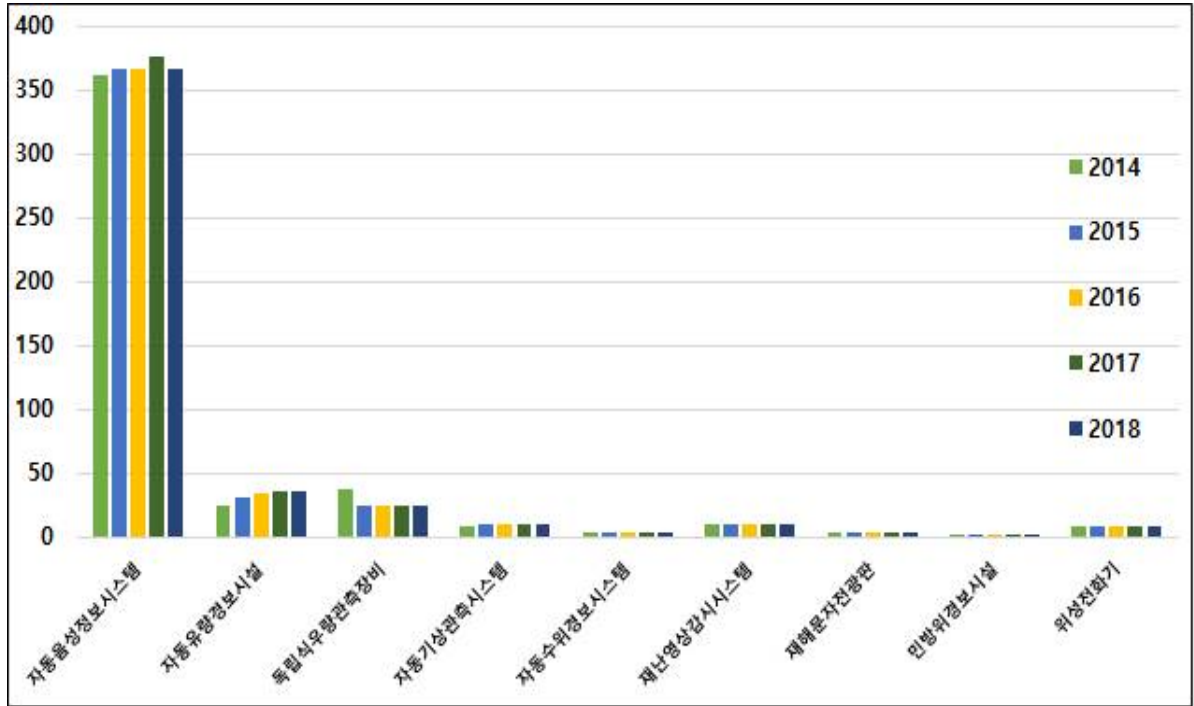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일반직 현원(인원)	24	25	15	15	15
기능직 현원(인원)	2	-	-	-	-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66	거창군 일원
자동우량경보시설	36	거창군 일원
독립식우량관측장비	24	거창군 일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10	거창군 일원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3	거창교, 사마교, 장풍숲교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0	거창군 일원
재해문자전광판	4	장풍숲외3개소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2	거창군청, 스포츠파크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위성전화기	8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기타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61	366	366	377	366
자동우량경보시설	25	31	35	36	36
독립식우량관측장비	37	24	24	24	24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9	10	10	10	10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3	3	3	3	3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0	10	10	10	10
재해문자전광판	4	4	4	4	4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2	2	2	2	2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	-	-		
위성전화기	8	8	8	8	8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	-	-		
기타	-	-	-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 실시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총 계			23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관련 교육	2018년 연중	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	39	
2018년 안보현장 체험교육	18.10.24. ~ 10.26.	거창군청	29	
공직자 안보교육	18. 8. 28.	거창군청	163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4. 20.	창녕군	2명	○ 직무능력 강화교육 참석	자체	
5. 17.	거창읍	30명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	거창군	
10. 4.	울산시	25명	○ 국립재난안전교육원	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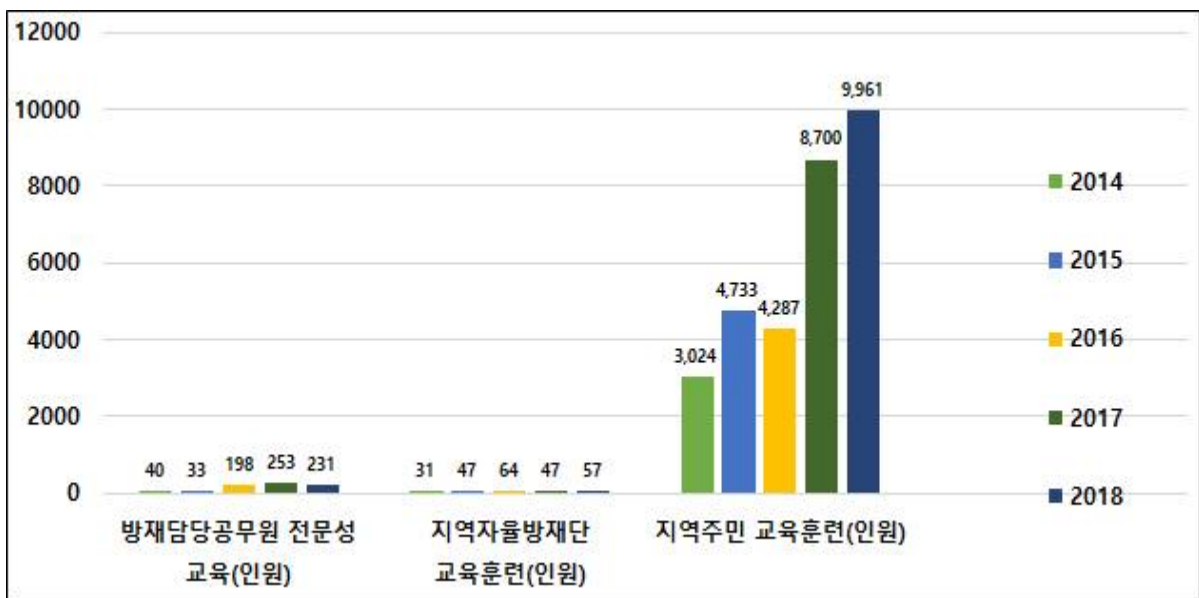
다.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총계			9,961			
생애주기별 안전사고 예방교육	3월~12월	관내 어린이집 및 초중고 등	9,521	교통안전, 생활안전(전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안전체험	거창군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3월~12월	전읍면	440	굴삭기운전실습 교통안전교육 농기계안전사고 예방교육	농업 기술센터	

-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40	33	198	253	231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31	47	64	47	57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3,024	4,733	4,287	8,700	9,961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 고
'18.03.02.	거창군청	56	- 안전사고 예방대책 - 현장제보 모바일앱 설명	거창군	
'18.05.25.	거창군청	45	- 제보를 통한 사전예방 중요성 교육	거창군	
'18.09.28.	거창군청	50	- 봉사단 활성화 제보방법	거창군	
'18.12.07.	거창군청	26	- 안전의식 강화 - 응급상황 처치요령	거창군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65	22	21		1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안전한 설보내기 캠페인	안전한 설보내기 캠페인	2.8.	거창시장 일원	150	
2	화재대피훈련 홍보캠페인	전 국민 화재대피훈련 홍보	3. 19.	거창읍 로터리	50	
3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봄 맞이 안전의식 함양	4. 2.	거창읍 로터리	50	
4	소소심 익히기 캠페인	안전문화운동 전개 소소심 익히기 캠페인	5. 15.	거창읍 로터리	100	
5	물놀이 안전점검 캠페인	물놀이 사고 예방 캠페인	7. 27.	위천면 사마솔숲	40	
6	폭염속 군민 지키기 홍보 캠페인	여름철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8. 3.	농협 거창군지부	30	
7	지진 안전주간 캠페인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홍보 및 안전의식 제고	9. 7.	거창읍 로터리	60	
8	추석명절 대비 안전점검 캠페인	명절 안전수칙 당부 및 홍보물품 배부	9. 21.	거창시장 일원	100	
9	화재대피훈련 홍보캠페인	전 국민 화재대피훈련 홍보	11. 26.	덕유산 요양병원	30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보도 일자	언론사명	기사제목	주요내용
1	01.10.	아시아 뉴스통신	거창군 대설에도 군민과 한마음으로 제설작업 실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불편 최소화
2	01.24.	아시아 투데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힘찬 출발	2019년 운영계획 논의
3	01.29.	경남매일	거창군 휴일기간 병원시설 긴급 화재점검	종합병원, 요양병원 안전수칙 생활화협조
4	01.31.	아시아 투데이	거창군 재난예방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홍보
5	02.12.	경남도민 신문	이광옥 거창 부군수 군부대·경찰서 방문	각종 재난재해시 협조 당부
6	02.12.	아시아 뉴스통신	거창군 국가안전대진단 전력	국가안전대진단 전력 홍보
7	03.01.	KNS 뉴스통신	2018년 1/4분기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	민관군경 상호협력 체계 구축
8	03.08.	KNS 뉴스통신	거창군 민간합동 현장점검 실시	민간합동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9	03.11.	경남도민 신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용역 홍보
10	03.13.	내외일보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정기총회 개최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의 활동 다짐
11	03.14.	브릿지경제	거창군 국가안전대진단 중간보고회 개최	점검실적 평가 및 애로사항 해소
12	03.21.	한남일보	제406차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훈련 실시	메가박스 화재대피훈련 실시
13	03.23.	한남일보	거창군 안전모니터봉사단 간담회 개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
14	03.26.	브릿지경제	거창군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에 박차	안전한국훈련 사전 기획 회의
15	03.27.	한남일보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정기총회 개최	결산보고 및 활동계획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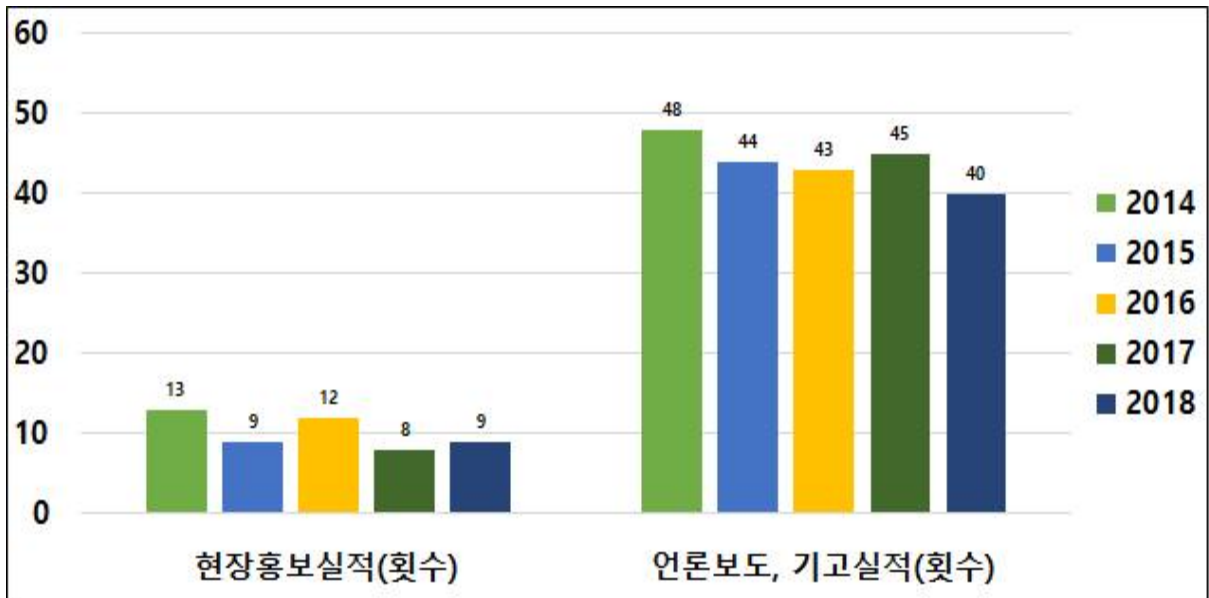
연번	보도 일자	언론사명	기사제목	주요내용
16	03.30.	한남일보	이광옥 부군수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대형공사장 방문 안전관리실태 점검
17	04.15.	경남도민 신문	거창군 안전한국훈련 2차 기획회의 개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만전
18	04.20.	신아일보	거창군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재해취약지역 현장 점검	인명피해 예방 위한 대피 계획 등 종합 점검 나서
19	04.24.	경남일보	시설물의 안전정책 변경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소규모 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20	04.24.	경남일보	국가안전대진단 최종보고회 개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보고
21	04.26.	경남도민 신문	거창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공청회 개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군민 및 관계관 토론
22	05.01.	경남도민 신문	거창군 안전한국훈련 3차 기획회의 개최	협업부서와 기관단체 역할·임무 점검
23	05.10.	경남도민 신문	거창군 안전한국훈련 돌입!	안전한국훈련 일정 및 훈련시작 홍보
24	05.13.	경남도민 신문	2/4분기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효과적인 통합방위 작전,화랑훈련 지원논의
25	05.20.	뉴스메이커	거창군 서울우유 거창공장에서 복합재난대응 현장훈련 실시	서울우유 거창공장 복합재난대응 현장훈련 실시
26	06.10.	경남도민 신문	CCTV관제센터 안전지킴이 거창경찰서장 감사패 수상	절도범 검거 유공 감사패 수여
26	06.24.	경남매일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화재예방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화재취약가구 대상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봉사활동
27	07.02.	CNB뉴스	제7호 태풍 뿌라삐룬 대책회의	군민과 한마음으로 재난예방 당부

연번	보도일자	언론사명	기사제목	주요내용
28	07.04.	경남일보	거창군수 여름철자연재난 대비 재난취약시설 현장점검	여름철 각종 자연재난 대비 현장점검
29	07.07.	뉴스프리존	거창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발대식 가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38명 발대식 개최
30	07.22.	경남도민 신문	거창군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선정	2019년 시범훈련 기관으로 행안부 기관표창 받아
31	07.19.	뉴스프리존	거창군 이광옥 부군수 무더위 쉼터 방문·격려	여름철 안부인사 및 주의사항 전달
32	07.24.	CNB뉴스	한경호 행정부지사 물놀이 안전점검 거창 순방	폭염속 수송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당부
33	07.26.	경남도민 신문	거창군 도심 살수차 운행으로 폭염대응 총력전	시내 열섬현상 저감 및 쾌적한 환경 조성
34	07.28.	브릿지경제	거창군 물놀이 안전점검 및 예방 캠페인 실시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나서
35	08.05.	신아일보	거창군, 폭염속 군민 지키기 홍보 캠페인 실시	여름철 폭염대비 군민행동요령 안내
36	08.21.	뉴스프리존	거창군 제19호 태풍 "솔릭"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가동	태풍 솔릭대비 상황판단회의
37	09.30.	경남도민 신문	군민의 시선으로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 제보 활성화	3분기 모니터봉사단 간담회
38	10.07.	경남도민 신문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 체험교육	울산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문 재난 체험
39	11.06.	경남신문	물놀이 안전관리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계곡 등에 요원 배치로 사고 제로화 달성
40	12.18.	경남도민 신문	거창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경진대회 장려	재난발생에 따른 대응절차·체계 매뉴얼

<연도별 비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현장홍보실적(횟수)	13	9	12	8	9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48	44	43	45	40

-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확대에 따른 언론 홍보 강화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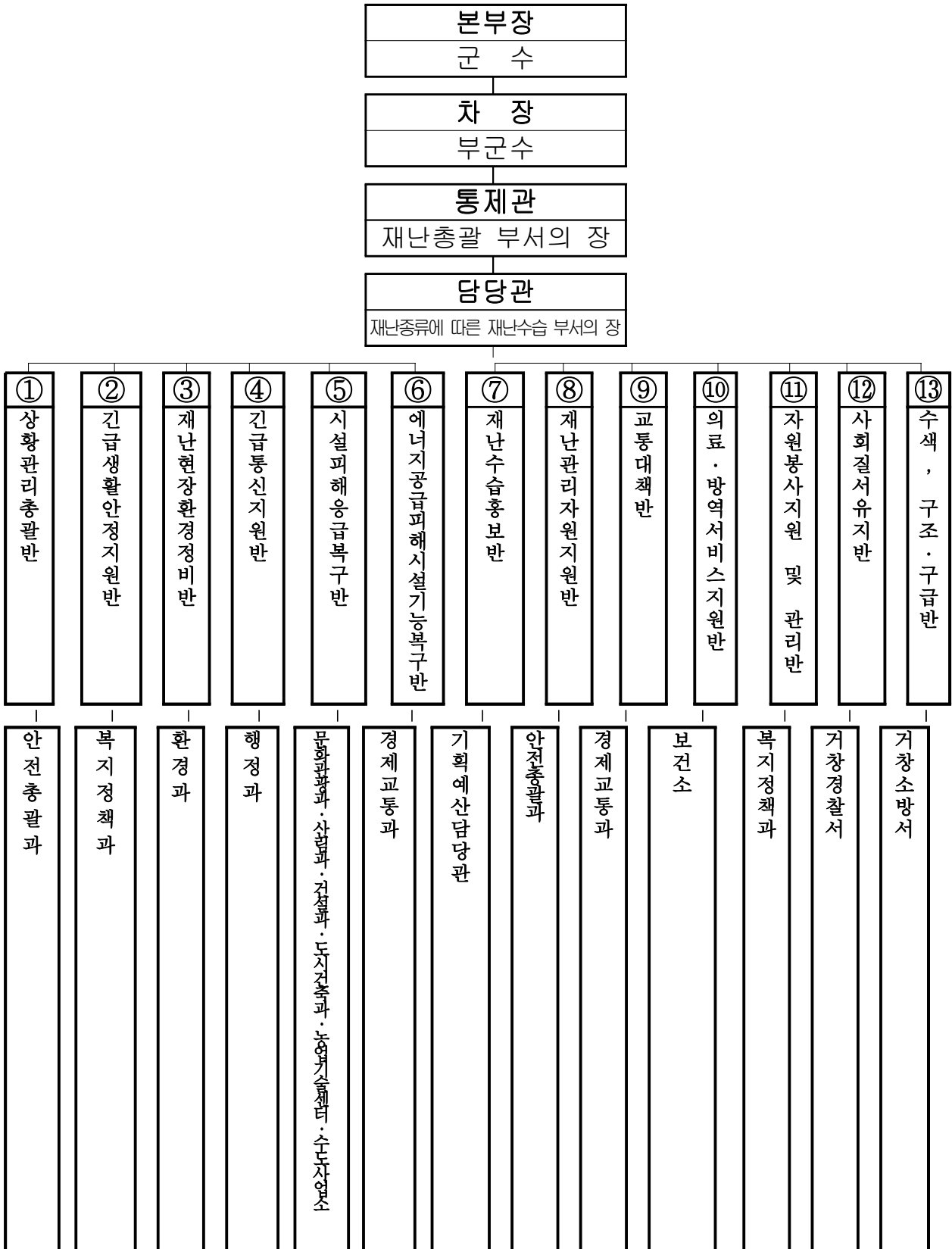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군수 • 위원 : 16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부군수 • 위원 : 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 •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부장: 군수 • 위원: 5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군수→도지사→국민안전처의 장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안전신문고 및 스마트지킴이 신고 • 군수,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도



자연재난 실무반별 업무

○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통제관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 반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화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안전 총괄과
	상황보고서 작성팀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가)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나)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다) 지진: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5)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6)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8) TV 방송 모니터링 9)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안전 총괄과 재난 수습 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1)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비상근무 단계 결정 5)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6)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7)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8)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안전 총괄과
	행정지원팀	1)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2)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3)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4)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행정과
협 업 기	긴급생활 안전지원반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복지 정책과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능 반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5)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1)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환경과
	긴급통신 지원반	1)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2)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3)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행정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1)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문화관광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에너지 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경제 교통과
	재난수습 홍보반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4)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7)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9)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기획 예산 담당 관
협 업 기 능 반	재난관리 및 자원지원반	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안전 총괄과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교통대책반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육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구간(도로, 항공) 실태 파악 보고 4)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경제 교통과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복지 정책과
사회질서 유지반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거창 경찰서
수색,구조· 구급반	1)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거창 소방서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2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거창경찰서, 거창소방서, 거창교육지원청, 육군8962부대 6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북부지사,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KT거창지사, 한국농어촌 거창함양지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단체)	

사회재난 실무반별 업무

○ 조직 및 담당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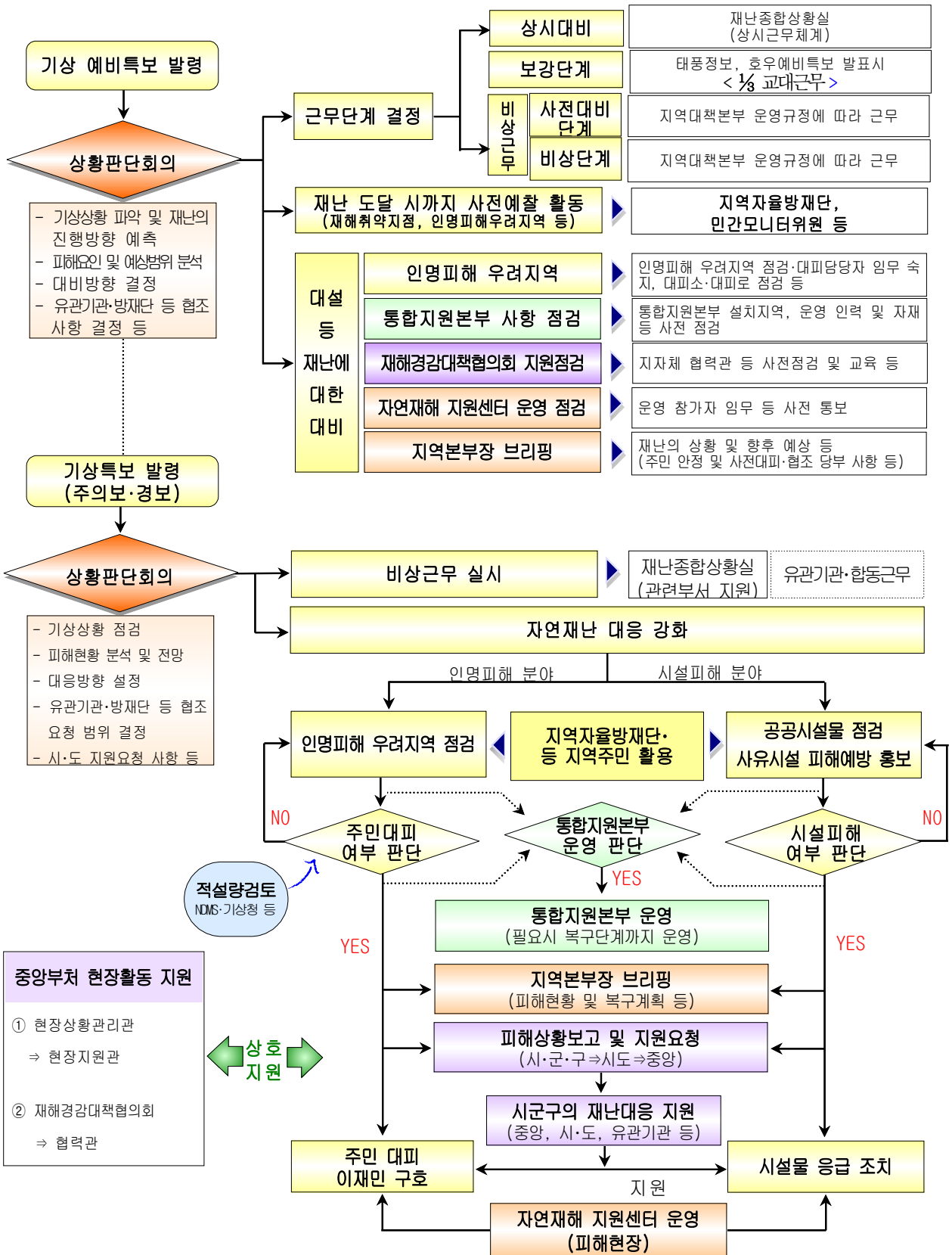
구 분		담당 업무	담당부서
통제관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상황관리총괄반	상황관리 총괄팀	1)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2)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3)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 4)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안전총괄과 행정과
	수습상황 파악팀	1)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2)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3)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4) 지역사고수습본부, 거창군 대책본부,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6)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협업 기 능 반	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5)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복지 정책과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1)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환경과
	긴급통신 지원반	1)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2)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3)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행정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1)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문화관광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담당 업무	담당부서
협업 기 능 반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경제교통과
	재난수습 홍보반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4)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7)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9)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기획예산 담당관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 자원공동활용시스템 운영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Sharing System: DRSS)가동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안전총괄과
	교통대책반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육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구간(도로, 항공) 실태 파악 보고 4)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경제교통과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반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복지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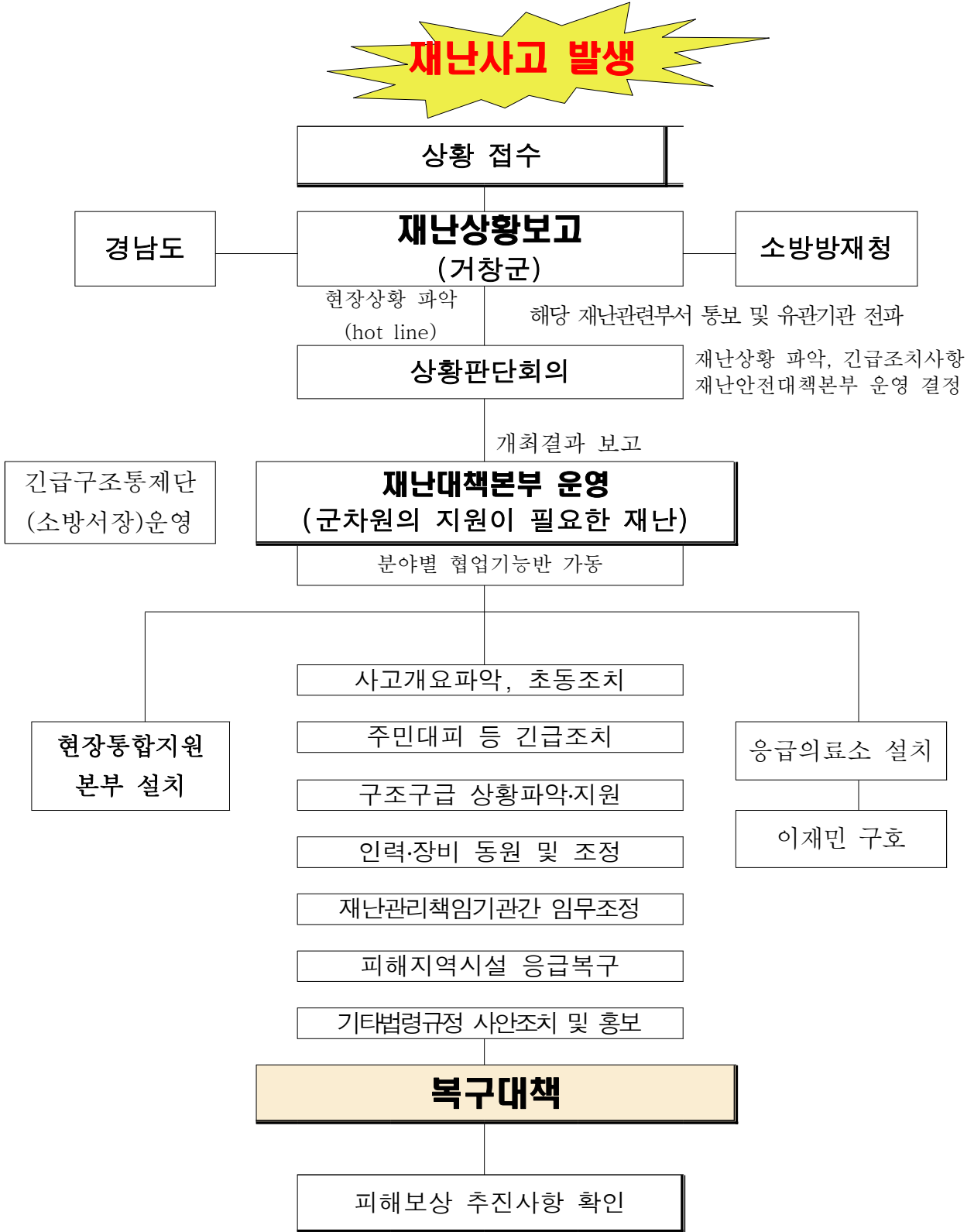
구 분		담당 업무	담당부서
협업 기능 반	사회질서유지 유지반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거창 경찰서
	수색,구조·구급반	1)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거창 소방서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2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거창경찰서, 거창소방서, 거창교육지원청, 육군8962부대 6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북부지사,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KT거창지사, 한국농어촌거창함양지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단체)	

(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 초기대응 행동체계도

[자연재난]



[사회재난]



[호우재난]

상황관리

기상상황 관리

- 기상청 일기예보·특보 예의 주시
- 집중호우 예상 읍·면 사전대비 조치
- 호우 예비특보 발효 시

정보
접수

호우 피해 발생

상황전파 [유선, NDMS, Safe-on]

비 상 소 집

- 읍·면 피해상황 접수 +10 분
- 지휘계통 보고 [과장→군수(본부) +15 분
- 해당 읍·면 초기 대응 지시(대피) +20 분
- 사전조치사항 NDMS 입력 (읍·면) +25 분
- 긴급 재난방송 요청 및 청내 13개 협업 전파 +30 분
-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집 +35 분
- 상황판단회의 개최 (유관기관 포함) +55 분
- 비상단계 결정(Ⅰ,Ⅱ,Ⅲ) +60 분

초기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 출동

군 민 홍 보

- 비상 단계별 대책반 근무 (13개협업) +65 분
-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70 분
- 읍·면 피해상황 접수 및 인력·물자 지원 조치 +75 분
- 구호물자, 이재민 대피소 지원 조치 +75 분

수습
복구

피해 물량 확정
[피해조사]

-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 소방 출동 조치 +80 분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 추진 +85 분
- 피해지역 교통통제, 구호활동 조치 +85 분
- 공영TV(유선자막),라디오 방송 +90 분
- 호우피해 발생 시 군민 행동요령 등 +90 분

복구 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건의 검토)

결
정
타
입

[지진재난]



[대형건축물 붕괴재난]

단계별	대응 시간	조치 사항	세부 실행 계획
붕괴 사고 상황 접수/ 보고/ 전파	▶ 10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보고 도시건축과장→(안전총괄과장) →부군수→군수 (구두, 전화, SNS, 서면 등) ■ 상황판단 (긴급처리, 긴급자시, 긴급요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건축물 붕괴사고 확인(상황발생) — 초동 상황보고 및 세부상황 확인 —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 및 관련단체 상황 전파 — 추가 붕괴위험 인근 건축물 대피명령(필요시)
초기 대응	▶ 90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비상소집 ■ 사고수습상황실 설치 ■ 유관기관 구조/구급 등 지원요청 ■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건축과 직원 비상소집(22명) 및 근무반 편성 —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 지원 요청 — ※ 구급 구조활동 및 교통통제 시행(소방서, 경찰서 등) — 사고수습상황실(도시건축과) 설치 및 긴급 안전진단반(건축사협회 등) 구성 — 긴급 복구 인력장비 확보 및 지원(건설과, 거창읍, 건설인협회 등 유관단체) —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요청(복지정책과)
후속 조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수습계획 수립 및 시행 ■ 항구복구체계 전환 ■ 종결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반 편상운영 — 현장처리 및 응급 보수보강방법 협의 및 시행 (사고수습 복구체제 전환) — 장기 방지대책 수립 — 상황종결보고 : 도시건축과장→부군수→군수

[산불재난]

일시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군	읍·면	
T+0 (상황발생)		산불발생 사고접수	소방서, 감시원 등 (산불발견 및 신고)	경상남도 (055-211-4264) 거창소방서 (945-1118) 거창기상대 (945-2395) 거창군 산림조합 (942-2247) 함양산림항공관리소 (960-2831) 《비상연락체계 가동》 전읍면 및 국립공원, 유관기관 등
T+10분 ~ T+20분	산림과 (도산불종합대책본부) 055-211-4265	군 산불종합대책본부 (상황실 또는 산림과) ○ 산불사고대처반 운영(산불상황 총괄 관리) - 상황별 대응(산불상황 접수, 진화, 종료) - 진화헬기 지원요청 - 군특별진화대 출동 또는 공무원 비상소집 - 지휘계통에 따른 사고상황 보고 - 유관기관 협조 체계 유지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 읍면 산불종합대책 상시 연락체계 유지 - 단계별 진화상황 보고(도 산림과) - 산불지역주민 보호대책 강구	읍면 산불종합대책본부 〈 초동대응 〉 ○ 산불현장 파악 및 보고 ○ 진화자원파악 및 투입 준비 - 감시원 출동명령 및 장비 지급 ○ 상황판단 및 진화계획 보고 - 진화계획수립 및 인력투입 ○ 군, 유관기관 상황전파 등 ○ 지역주민보호대책 강구 - 산불재난방송, 주민대피유도	유관기관 협조 관할 소방서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군부대장
T+30분 ~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읍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 연락체계 유지 - 교통통제, 주민대피 등 현장질서 유지 지원 - 상황종료 결정 및 보고·전파 - 피해실태 및 산불원인 조사, 환경영향 예측 및 복구 - 주민대피방송 실시(재난)	산불진화 통합지휘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대책본부설치, 대책회의 개최 - 진화계획, 진화반편성 등 토의 ○ 진화대편성 및 현장배치 등 ○ 주민대피령발령검토 및 발령 ○ 현장지휘권 인계 - 30ha 이상 → 부군수 - 100ha 이상 → 군수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	산불상황분석 자문단 (유관기관 협의체) ○ 산림분야관리자급 전문가 구성 - 상황분석 및 판단, 예측 - 실질적인 통제계획 수립 등 ○ 소방, 군, 경찰 등 산불유관기관 - 진화자원 지원, 정보교류 등

[산사태 재난]

단계 별	대 응 시 간	조 치 사 항	세 부 실 행 계 획
산사 태 상 황 접 수/ 전 파/ 보 고	T+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접수 및 전파 ■ 상황판단 (긴급처리, 긴급차시, 긴급요청 등) ■ 상황보고 산림과장 → (안전총괄과장) → 부군수 → 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사태 발생지역 주민 즉시 대피 실시 초동 상황보고 및 세부상황 확인 유관기관 협조요청 추가 산사태위험 인근 지역주민 대피명령(필요시)
초기 대응	T+1 ~ T+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출동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주민대피 실시(2차) ■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읍면산사태현장예방단 사고현장 출동 주민 대피 시설 확보 주민대피 응급복구 실시
후속 조치	T+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재해 응급복구 ■ 산사태 현장지휘소 구성 (대형 산사태 발생시) ■ 종결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복구 가용인력 동원 현장 투입 현장처리 및 응급 보수·보강방법 협의 및 시행 장기 방지대책 수립 유관기관 인력협조 요청

[저수지 긴급재난]

단계	부서(기관)	세 부 실행 내용	시간(분)
재난신고·초기대응·상황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재난종합상황실	긴급상황 발생, 재난신고 접수	2'
		관할 읍·면 주민 긴급대피, 복구장비 동원지시 · 하류지역 주민대피, 긴급 복구장비 동원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의한 재난전파 · 전파대상 : 군 재난부서, 읍·면장,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	
		재난종합상황실 → 안전총괄과, 건설과 비상소집 · 소집방법 : 유선 및 SMS(문자전송), 지휘계통보고 · 주민대피 : 읍·면장 마을방송 실시 인명피해 발생 시 즉시 구급·구조 실시 지휘계통 긴급보고(구두, 전화, 서면 등) · 보고체계 : 과장 → 부군수	30'
안전총괄과 건설과 초동대응팀 운영	현장 상황 관리관 파견(안전총괄과) · 현장출동 피해상황, 행정지원 사항 파악 등	35'	
	초동대응팀 운영(건설과) · 재난상황 접수, 상황유지, 위기대응 총괄	40'	
	해당 읍·면 및 유관기관 초기대응 조치 · 사고현장출동, 긴급구조 장비 및 인력지원 지시 · 응급의료 지원체계의 신속가동	45'	
재난대응	안전총괄과 건설과	사고수습본부 설치(안전총괄과) · 초기재난 정보수집·분석, 사상자 병원후송,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60'
		재난 상황정보 수집 · 수집방법 : 출동소방대원, 건설과, 안전총괄과, 읍·면 등	80'
	안전총괄과 건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저수지 재난위기관리 행동매뉴얼에 따라 상황대처 · 재난지역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 지원 · 주민대피장소 확보 및 지원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장비투입 및 긴급현장복구 · 사고형태, 인명피해규모, 사고현장 상황파악	90'
홍	안전총괄과	TV(유선자막), 라디오방송, 신문	100'

[도시가스 재난]

단계 별	대 응 시 간	조 치 사 항	세 부 실 행 계 획
가스 사고 상황 접수/ 전파/ 보고	▶ 10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구두,전화,SNS,서면 등) ■ 현장 출동, 상황 파악 ■ 사고유형별 유관기관 조치사항 지휘·통제 ■ 초동 상황 구두보고 (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접수(피해규모, 공급시설 위치, 연락처 등 확인) —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가스안전공사경남서부지사, 거창소방서, 거창경찰서) — 중앙제어실을 활용한 현장 상황 파악 (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출동 및 실시간 모니터링) — 유관기관별 사고수습 분담역할 점검, 현장 지휘 통제 (동원장비 및 인력 수급, 사고수습 역할 부여)
초기 대응	▶ 30분 ▶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선 구축 ■ 주민대피 ■ 구급/구조, 화재진압 ■ 초기대응 구두보고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누설 차단, 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통제, 안전펜스 설치 등 방재선 구축(경찰서) — 주민대피 지원 및 안내방송(군) — 구급/구조, 화재진압(소방서) — 중앙제어실/현장에서 차단밸브 작동, 배관내 잔류가스 처리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업체 안전관리자)
후속 조치	▶ 군 경제 교통과 (3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수습본부 설치 ■ 사고수습 복구단 급파 ■ 사고원인 조사 ■ 사고 종결 보고 ■ 복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수습본부 설치(경제교통과) — 현장처리 및 응급 보수보강 시행(사고수습 복구단) - 도시가스 등 연료의 긴급 수급 및 공급대책 시행 — 사고원인 조사(가스안전공사 및 관련업체) — 언론, 유관기관 등에 상황종결 전파 — 항구 복구계획 수립 및 검토

[유해화학물질 유출재난]

단계 별	대 응 시 간	조 치 사 항	세 부 실 행 계 획
상황 접수/ 전파/ 보고	T+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전파 종합상황반 가동 ■ 상황보고 ■ 상황보고 환경과장→(안전총괄과장)→부 군수→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상황 관리 및 전파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 관계실과와 연락체계 구축,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사고원인 조사
▼			
초기 대응	T+0 ~ T+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수습 ■ 주민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지역 지·출입 통제 및 사고원인 조사 — 사고물질 대응정보 파악 및 방제활동 — 사고지역 오염물질 수거·폐기 및 잔류오염도 확인 — 주민대피, 사상자·이재민 보호 및 구호활동 지원
▼			
후속 조치	T+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지원 ■ 방재지원 ■ 사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오염방지 및 피해확산 방지활동 — 현장복구를 위한 장비·물자 지원, 자재 수급 — 주민건강 및 환경영향조사 — 언론보도 및 주민홍보 — 보상대책 및 유족지원대책 마련

[문화재 재난]

단계별	대응 시간	조치 사항	세부 실행 계획
화재 상황 접수/ 보고/ 전파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등에 화재신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신속한 진화 및 조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자위소방대원 소집 (주요목조문화재) ■ 문화재 소산시행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상황보고 : 문화재청 및 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119) 신고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위치와 주소를 말하고 10초 이상 통화한다 · 화재종류(일반, 유류, 전기, 가스)를 말한다. ■ 신속한 진화 및 지원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소화기, 소화전으로 초동진화 · 전원 차단, 가스 밸브 잠금조치 · 문화재 관람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유도 · 관련기관(경찰서, 한전, 가스공사 등) 지원 요청 ■ 자위 소방대원 즉시 비상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주변거주 자위소방대원 우선 소집 · 자위소방대원 개인별 부여된 임무수행 지시 · 화재 초동진화 작업투입 및 문화재 주변 출입 통제 ■ 문화재 소산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문화재 우선 소산후 비지정문화재 소산 · 손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량문화재 우선 소산 · 중량문화재는 모래주머니로 싸거나 방화피복 조치 · 소형운반상자, 충격보호장비를 갖추어 2인 이상 운반 ■ 관련기관 상황보고 : 문화재청, 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문화재부서/당직실) → 도 상황실(문화재담당) → 소방방재청 상황실(문화재청 안전기준과)
화재 대응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지휘권 인계 ■ 위험물 차단(관련기관) ■ 경찰서 질서유지 등 ■ 시·군·도·문화재청 현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진화대 도착후 현장지휘 인계 및 진화 —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전기, 가스시설 안전조치 (한전, 가스공사 등) — 문화재 주변 인화물질을 제거하여 2차 확산 방지 — 경찰관을 배치하여 질서유지 및 문화재 도난방지 — 군·도·문화재청 화재피해 현지확인
후속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원인 파악 ■ 화재 피해보고 ■ 문화재 복구계획 등 수립 ■ 복구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원인(경찰서, 소방서)파악 및 피해현황 최종정리 — 화재피해 완료보고 : 군 → 도 → 문화재청 — 문화재 복구계획 또는 해지절차 등 이행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문화재청에서 결정)

[감염병 재난]

단계별	대응 시간	조치 사항	세부 실행 계획
상황 접수/전파 (보고)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 보고/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환자 신고 : 병의원→보건소→도→질병관리본부 — 해외유입환자 신고 : 검역소→도(접수)→전파(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접수 동시 내부보고 — 보건소 긴급대책반 소집, 비상근무 실시
초동 조치	2시간 ~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대책반 운영 ■ 현장조사 출동 ■ 환자 모니터링 ■ 대응체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역학조사반 현지 출동, 역학조사 실시 — 감염자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보건소, 도 보건환경연구원) — 감염자, 가족 등 밀접 접촉자 모니터링 및 예방접종력 조사 — 범정부적(질병관리본부, 도, 보건소, 유관기관) 대응체계 가동
긴급 대응 조치	4시간 ~ 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이송 및 격리 ■ 방역 물자지원 ■ 입국자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의심환자 자택 격리 및 거점병원 후송 — 국가지정 격리병상(경상대학교병원) 입원조치(1인실) — 신종감염병일 경우 항바이러스제 등 방역물자 확보 — 해외유입 감염병일 경우 입국자 관리 강화(검역소 및 도, 보건소)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결과 유행차단 ■ 예방접종 ■ 감염병 확산방지 (약품, 격리소 추가 확보) ■ 유행관찰 및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검사결과와 감염병 확정시 환자격리(1~3일 소요) — 감염병확산우려 대비 도,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예방접종 실시 — 감염지역 인근 의료기관 및 감염 접촉자 모니터링 — 감염병 정보, 위생관리 수칙 및 방역활동 등 홍보 강화 — 유행관찰 및 대응조치(도, 질병관리본부와 연계) — ※ 검사기간 : 1차(1~3일), 2차(3~7일) 소요
상황 종결	유행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 보고 ■ 상황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환자 발생일로부터 해당질환 통상 잠복기 2배 경과일 이후 유행종결(3~4주 이후) 선언 — *홍역 : 마지막 환자 3주후 종결선언 → 질병관리본부
후속 조치	종결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처리 ■ 재발방지 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대응별 조치사항에 대한 평가 및 보안 —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 장비, 비축물자, 진단시약 비축, 관리 보안 — 군내 방역요원에 대한 평가 및 교육 실시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없음.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 지정시설물 없음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상동급경사지 정비사업	거창읍 상림리	옹벽 L=97.0m H=5.0m	2016. 03. ~ 2018. 05.	1,800백만원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유지
정장천 정비사업	거창읍 정장리	호안정비 L=2,540m	2015. 03. ~ 2018. 12.	6,938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침수) 정비사업
유령소하천 정비공사	웅양면 죽림리	호안정비 L=1,200m	2017. 04. ~ 2018. 12.	2,000백만원	재해예방
음기소하천 정비공사	가조면 기리	호안정비 L=1,060m	2016. 12. ~ 2018. 05.	2,200백만원	재해예방
원동소하천 정비공사	거창읍 가지리	호안정비 L=180m	2017. 04. ~ 2018. 06.	300백만원	재해예방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 웬스	유흡 착제	흡착물	유처리제
		km	천매	박스	kl
총계	193	2.2	4.8	56	130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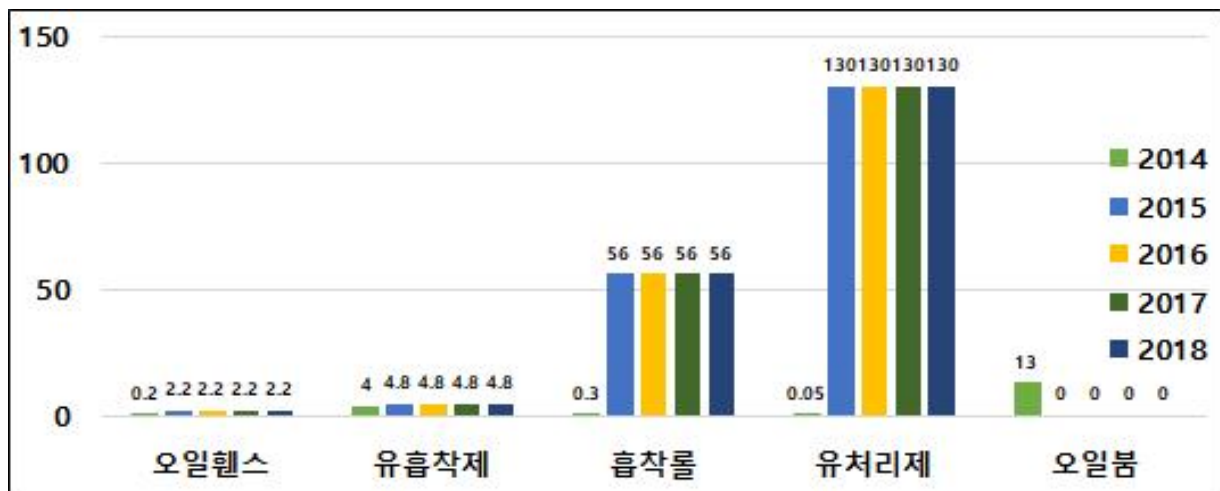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4	27	83	6	267	9(시체안치실)
병 원	3	24	75	5	267	9
보건소	1	3	8	1	0	0

[수용시설]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61	11,313	15	9,678	43	1,308	-	-	3	32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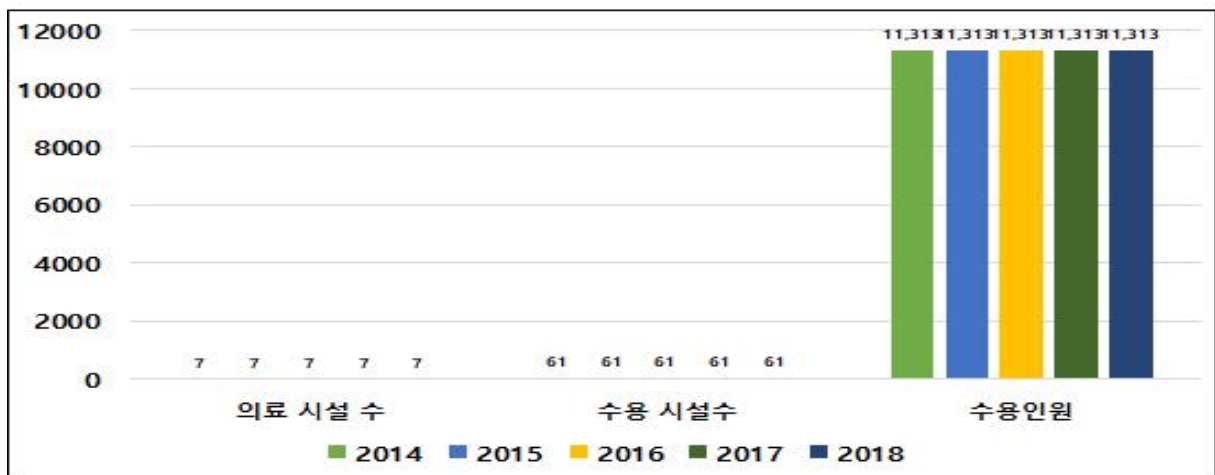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

방재물자 종류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오일웬스	0.20	2.2	2.2	2.2	2.2
유흡착제	4	4.8	4.8	4.8	4.8
흡착물	0.30	56	56	56	56
유처리제	0.05	130	130	130	130
오일붐	13	-	-	-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의료 시설수	7	7	7	7	7
수용 시설수	61	61	61	61	61
수용인원	11,313	11,313	11,313	11,313	11,313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 구조장비

구분	계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헬기	구명보트	산소호흡기	잠수 세트	비고
총계	525	1	1	1	-	2	4	32	484

◆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우져	덤프	청소차
총계	96	1	50	2	4	39

◆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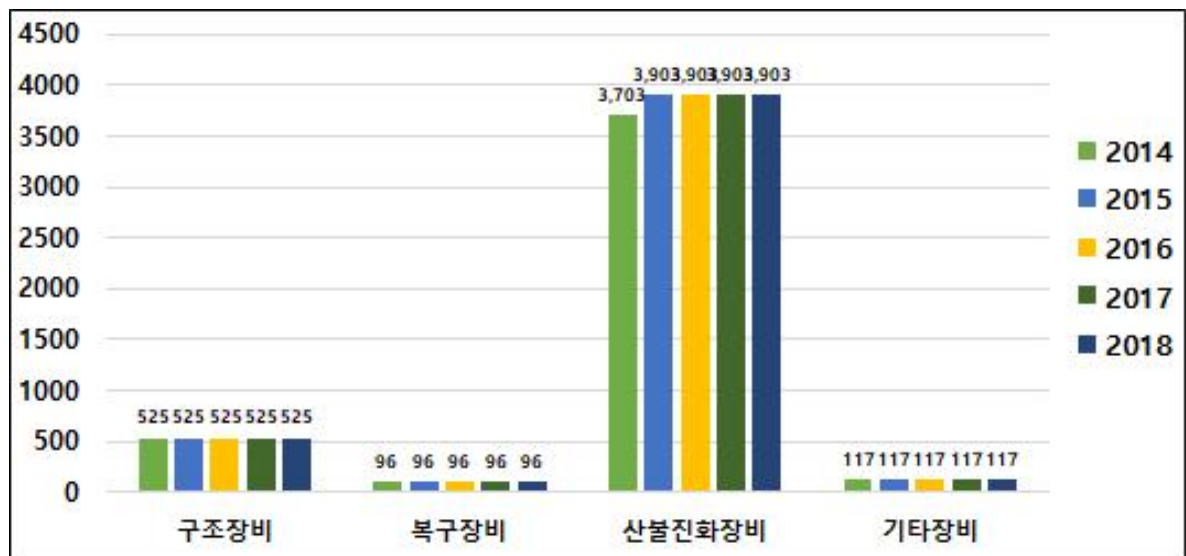
구분	계	헬기보유	헬기임차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동력통재	휴대무전기	찢차대	간이수조	진호도구	진화안전장비세트
총계	3,903	0	1	16	12	12	247	1	4	3,600	10

◆ 기타장비

구분	계	양수기	발전기	소형절단기	고압분무기	기타
총계	117	30	3	40	2	42

◆ 연도별 비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구조장비	525	525	525	525	525
복구장비	96	96	96	96	96
산불진화장비	3,703	3,903	3,903	3,903	3,903
기타장비	117	117	117	117	117



[인력지정]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기타
인원	41	14	9	4	6	2	-	1	5 (조정3, 승강기1, 금속1)

◆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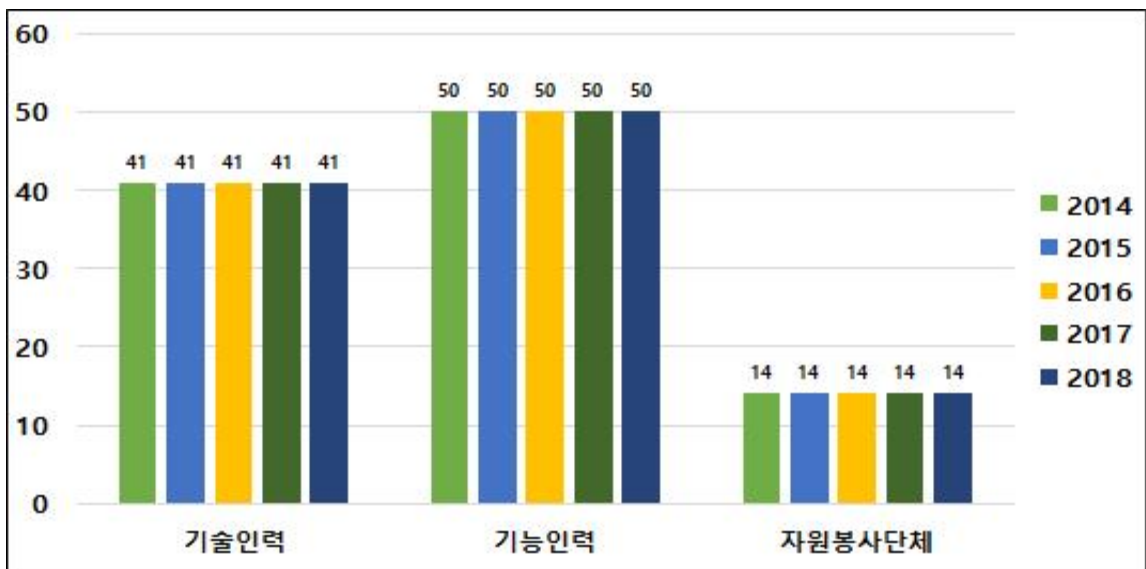
구분	계	전기공	중기 정비	중기 운용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기타
인원	50	2	1	28	1	-	13	5 (건축1 정보처리1 보일러1 컴퓨터활용1 거푸집1)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소방대	EMS 응급이송단	스킨스쿠버연합회	(사) 한국 해양 구조단 거창 지역대	기타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단체수	15	2	1	1	1	2	1	1	1	1	1	3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기술인력	41	41	41	41	41
기능인력	50	50	50	50	50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14	14	14	14	14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화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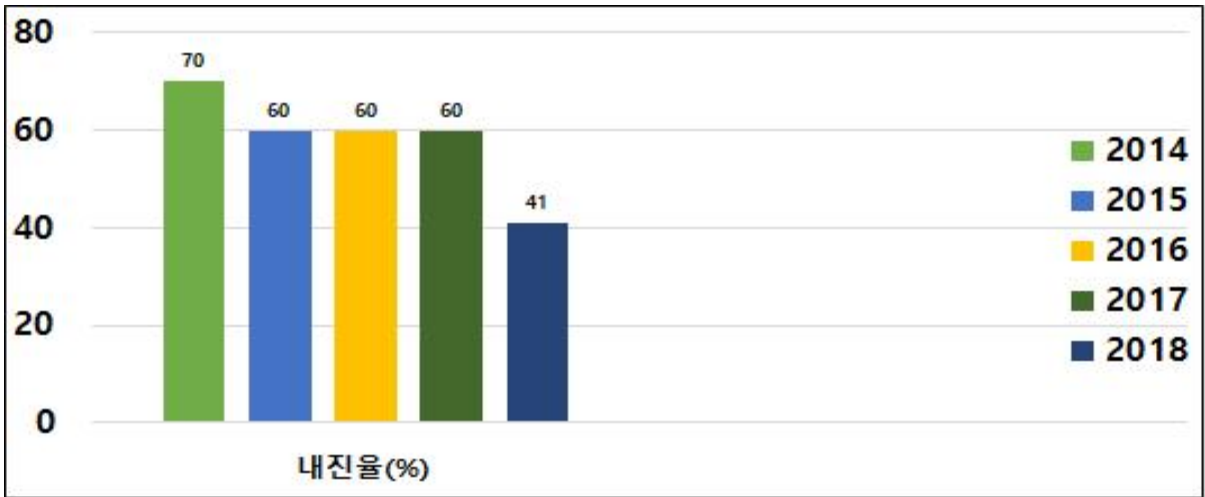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여름철 사전대비 실태평가	4월	행정안전부	보통	
겨울철 사전대비 실태평가	12월	행정안전부	우수	
재난관리평가	다음연도 2월	행정안전부	평가중	
물놀이 안전관리 실적점검	11월	행정안전부	국무총리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평가	6월	행정안전부	우수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18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계	70	29	-	-	41
공공건축물	34	-	-	-	0
도로시설물	26	25	-	-	96
수도시설	4	1	-	-	25
폐수종말 처리시설	1	0	-	-	0
공공하수 처리시설	3	3	-	-	100
병원시설	2	0	-	-	0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내진율(%)	70	60	60	60	41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보강	여	여	
종합상황실	보강	여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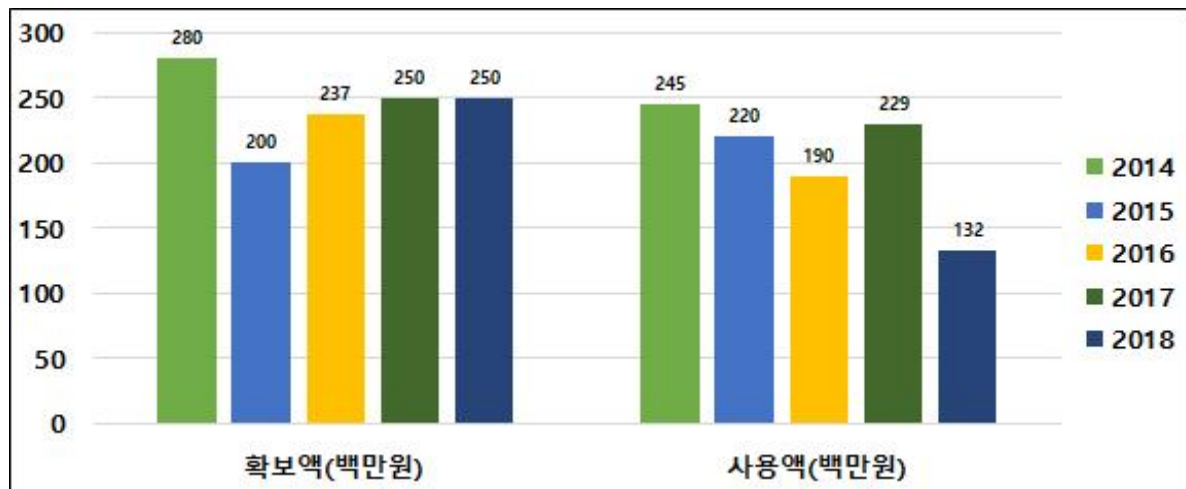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100이상	213백만원	250백만원	117%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확보액		280	200	237	250	250
사 용 액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16	13	99	10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245	220	190	229	132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	-	-	-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	-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	-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	-	-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	-	-



- 2018년 적립기준액은 213백만원이고 확보액은 250백만원으로 기준액 확보 달성 및 충족함
- 2018년은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438백만원(도비 276, 군비 162)을 예산 편성하여 군비 사용액은 142백만원 사용하였음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영 현황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실과소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	안전총괄과	2016	풍수해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지진	안전총괄과	2016	지진재난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대형 화산폭발	안전총괄과	2016	대형 화산폭발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가뭄	안전총괄과	2017	가뭄대응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산불	산림과	2016	산불재난 예방·대응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과	2016	유해화학물질 유출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대규모 수질오염	환경과	2016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총괄과	2017	다중밀집 시설 대형화재로 인한 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경제교통과	2017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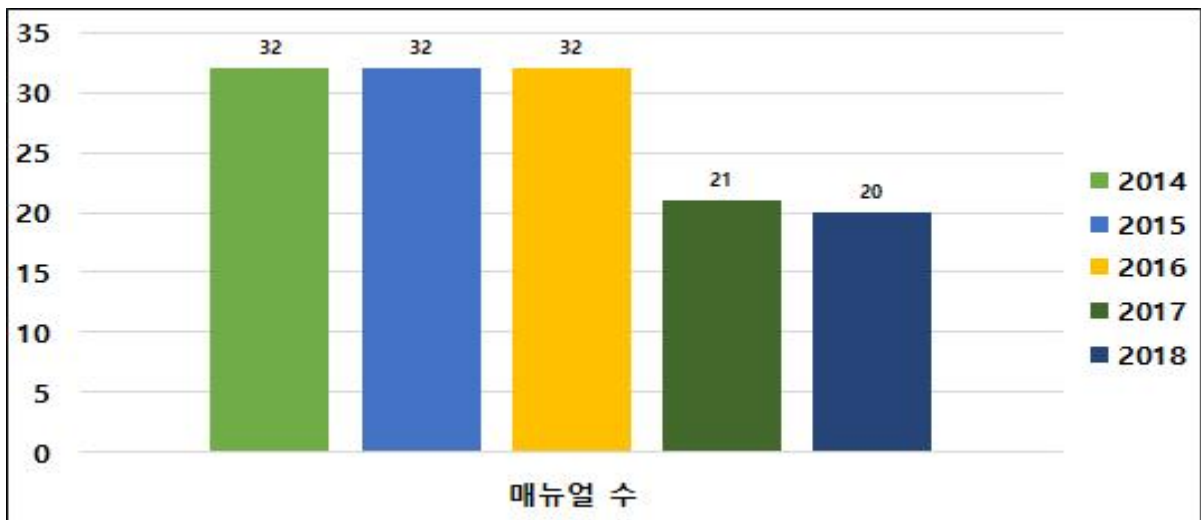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실 과 소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다중밀집건축물붕괴대형사 고	도시건축과	2016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대비 대응 및 행동요령
기축질병	농업축산과	2016	AI, 구제역 등 기축질병 발생 시 대응사항
감염병	보건소	2016	감염병분야 위기관리, 해외신종 관내 유입 방지
전 력	경제교통과	2016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보건의료	보건소	2016	병원진료, 의약품공급, 혈액수급
식용수	수도사업소	2016	식용수 분야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
육상화물 운송	경제교통과	2016	육상화물 종사자 피업 등에 관한 대처 등
가 스	경제교통과	2016	가스분야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내수면 유도선사고	안전총괄과	2016	내륙 유도선 사고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저수지 붕괴	건설과	2016	저수지 붕괴사고 발생 시 대응 조치
문화재	문화관광과	2016	위기상황 발생 시 거창군이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대규모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 뉴얼 제외한 19종	2018. 11.	- 통합지원본부 설치 · 운영조례 개정사항 반영	

◆ 년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매뉴얼 수	32	32	32	21	20



- 체계적인 재난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매뉴얼 정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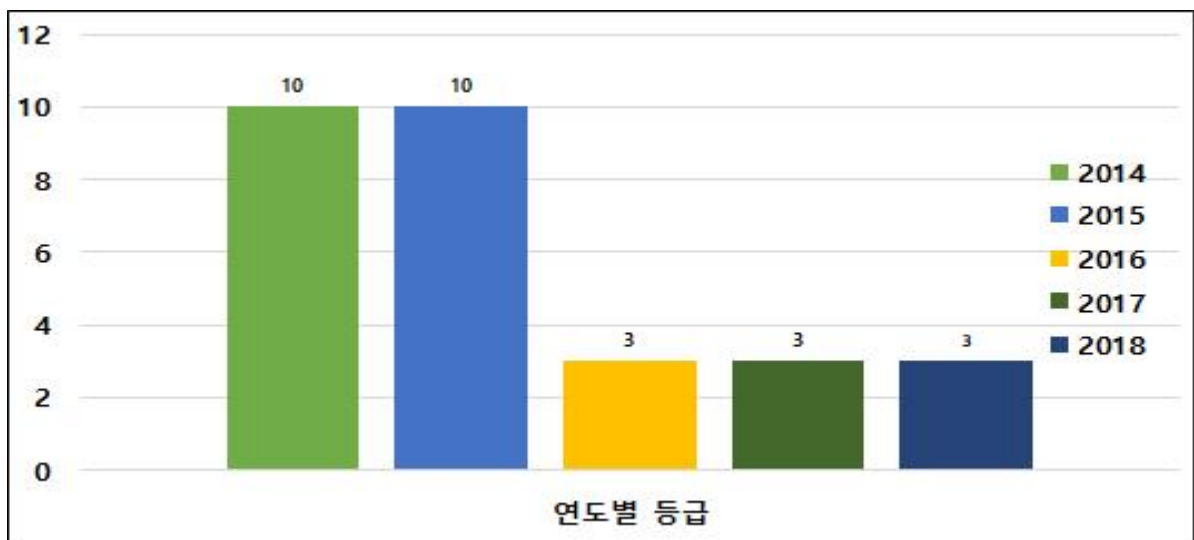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 지수	등 급(그룹)
진단결과	0.374	0.978	0.750	0.450	3

◆ 연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등 급	10	10	3	3	3



- 전국 228개 지자체의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15년도 이후 점차 상향

⑥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8년 폭염대응 총력 추진

- 폭염대응 T/F팀 구성 운영(상황관리반 등 5개반 36명)
- 부군수 폭염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점검
 - 폭염대비 쿨링그늘막 현황 18개소
- 지역자율방재단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상시점검 실시
- 폭염 정보 발령 및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및 대책 특별 지시
 - 부군수 주재 간부회의 실시(7. 18.) / 관계부서 대책회의(7. 20.)
- 2018년 무더위쉼터 신규 간판 교체(300개소)
- 농업기술센터 폭염피해예방단 운영
-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도심 살수차 운행
- 폭염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업 현장방문
 - 군수 현장점검 실시(7. 26.), 부군수 현장점검 실시(7. 27.)
- 폭염 장기화에 따른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 폭염 그늘막 3개소 설치(몽골텐트 / 로타리1, 군농협1, 대동로타리1)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거창군 안전총괄과 (담당자 : 이재혁, 전화 : 055)940-3633)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 : 중로1-54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54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 4. 4.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행구간		최 초 결정일	비고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기점	종점		
교통 시설	도시계획도로 (중로1-54호선)	거창	대평	중로	1	54	1,190	20.0	27,389	거창읍 대평리 946	거창읍 대평리 440-2	거고152호 ('17.12.7.)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우편번호 50132)
- 사 업 명 : 거창읍 대평리 우회도로(중로1-54호선) 개설공사

3.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2)

4.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 FAX 055-940-3579), E-mail(njtm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 성 명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 고
					주 소	성 명	권리면	권리자	
합계	거창읍		125,678	27,389					
1	대평리	946	10,231	1,372	경남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 1길 65	송정란			
2	대평리	993 2	1,965	60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2길 10,102동 604호	배옥주			
3	대평리	598 1	254	47	대구 달서구 상인동 1473 낙원아파트 103동 303호	김상대			
4	대평리	684 2	2,988	25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2길 21	정옥분			
5	대평리	679	337	332	김천리 101-3	김득환			
6	대평리	680	202	198	김천리 101-3	김득환			
7	대평리	677 2	579	575	김천리 101-3	김득환			
8	대평리	677 1	1,524	496	경북 구미시 인동43길 22-42 206동 1005호	김은호			
9	대평리	676	1,058	513	동동31	이성원			
10	대평리	675	919	441	동동31	이성원			
11	대평리	10 2	28,732	379		농림수산 부			국
12	대평리	674	998	49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3길 27	윤정주			
13	대평리	673	1,028	513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46길 18,1동506호	성길성			
14	대평리	672 2	1,021	501	경남 합천군 봉산면 상현리 37	허덕영			
15	대평리	672 1	1,018	511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22 동성리젠시 602	김영애 외 3인			
16	대평리	660 2	526	517	김천리 49-1	창녕조씨 문서정도 촌공파중 종			
17	대평리	671	1,722	12	대구시 동구 율하서로 85,109동 1305호	도말식			
18	대평리	595 1	3,690	121		농림수산 부			국
19	대평리	660 4	167	88		거창군			공
20	대평리	660 1	1,281	707	상림리 14	유우연			
21	대평리	659	998	480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22 동성리젠시 602	김영애 외 3인			
22	대평리	658	1,051	498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22 동성리젠시 602	김영애 외 3인			
23	대평리	657	1,319	505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22 동성리젠시 602	김영애 외 3인			
24	대평리	656	2,069	840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145-35	김창수			
25	대평리	655	833	349	대동리 727-3	박석균			
26	대평리	654	2,017	822	대동리 727-3	박석균			
27	대평리	653	1,431	534	정장리363	이현재			
28	대평리	652	456	243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445-33	이현재			
29	대평리	651	1,749	735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445-33	이현재			
30	대평리	650	1,458	696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개화2길 26-3	이민순			
31	대평리	649 2	1,395	682	경남 거창군 남하면 양향리 926-1	박정목 외 2인			
32	대평리	431 5	2,615	502	고제면 개명리 1035	이통천			
33	대평리	431 3	1,273	473	남하면 양향리 100	문재권			

34	대평리	431	2	1,098	410	남하면 양향리 100	문재권			
35	대평리	1468	5	1,640	125		국토교통부			국
36	대평리	428	1	2,060	49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2길 24-4	홍원술			
37	대평리	427	1	2,463	497	남하면 양향리 576	윤원생			
38	대평리	426		2,922	966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개화2길 26-3	이민순			
39	대평리	425		2,982	322	거창읍 동동 74-18	이상렬			
40	대평리	1468	6	1,071	42		국토교통부			국
41	대평리	410		3,206	4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 2길 24-4	홍원술			
42	대평리	406		2,803	2,098	정장리 47	이동재 외 1인			
43	대평리	1468	2	896	23		국토교통부			국
44	대평리	7	18	4,449	134		농림수산부			국
45	대평리	394	1	1,302	83	1185	김판술			
46	대평리	392		2,731	1,053	경남 마산시 내서울 삼계리 7 마산삼계1주공아파트 115-1504	곽기룡			
47	대평리	1512		4,727.1	503		거창군			공
48	대평리	1452	71	307	7		재무부			국
49	대평리	432	2	932	61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시장길 44	노인숙			
50	대평리	432	1	189	189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시장길 44	노인숙			
51	대평리	434	2	1,312	221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642번길 83	강종철 외 5인			
52	대평리	434	5	53	34		농림축산식품부			국
53	대평리	434	1	332	58		농수산부			국
54	대평리	441	132	43	43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8길 32-25	거창축산업협동조합			
55	대평리	441	131	19	19		거창군			공
56	대평리	441	95	443	26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새동네 2길 53	신재광			
57	대평리	441	154	179	179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새동네 2길 53	신재광			
58	대평리	441	92	948	38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새동네 2길 53	신재광			
59	대평리	441	153	113	113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새동네 2길 53	신재광			
60	대평리	441	118	154	154	상동 137-2	거창축산업협동조합			
61	대평리	1452	45	766	109		기획재정부			국
62	대평리	1452	43	843	323		기획재정부			국
63	대평리	440	44	5,630	2,128	상동 137-2	거창축산업협동조합			
64	대평리	440	12	161	12		거창군			공